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686-14

#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목 차

C O N T E N T S

## I ➔ 업무 개요\_1

1. 목적 .....	3
2. 근거법령 .....	3
3. 급여제한의 성격 .....	5
4. 급여제한 유형 .....	6
5. 상해요인 사례별 처리과정 .....	7
6. 업무처리 절차 .....	21
7. 업무수행체계 .....	23

## II ➔ 의료급여의 제한\_25

1.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고의 사고 ..	27
가. 급여제한의 개념 및 절차 .....	27
나. 의료급여제한의 요건 .....	30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의 급여제한 .....	35
가. 산업재해 보상 .....	35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38
다. 국가 등에 의한 손해배상 .....	41

### III → 의료급여비용의 환수 \_ 45

1. 구상권제도 .....	47
가. 제도의 개요 .....	47
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구상범위 .....	48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과 구상범위 .....	65
라. 구상권의 행사 .....	68
마. 보장기관의 급여면책 .....	71
2. 부당이득의 징수 .....	75
가. 제도의 개요 .....	75
나. 부당이득 징수 요건 .....	77
다.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	78

### IV → 상해요인 업무 프로세스 \_ 83

1. 상해요인조사 개요 .....	85
가. 근거 .....	85
나. 용어의 정의 .....	87
다. 상해요인 관리대상 .....	88
라. 상해요인 처리절차 .....	88
마.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요령 .....	90
2. 급여제한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 .....	108
가. 부당이득 징수 .....	108

나. 구상권의 행사 .....	111
다. 납부의무자 .....	111
라. 급여비용 환수범위 .....	115
마. 소멸시효 .....	115
바. 결손처분 .....	117
사. 구상권행사를 위한 민사소송 .....	120
<b>3. 권익구제 .....</b>	<b>126</b>
가. 이의신청 .....	126
나. 행정쟁송 .....	129

V     **상해요인 관련 사례\_131**

1. 부당결정에 따른 판례 및 주의사항 .....	133
2.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관련 급여제한 .....	142
3. 다른 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급여제한 .....	157
4. 의료급여비용의 환수 .....	159
5. 소멸시효 기산 등 시점의 판단 .....	174

VI     **서식\_179**



## I . 업무 개요



# I

## 업무 개요

### 1 목적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그러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가 수급권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때문에 의료급여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의료급여 사유 및 조건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의료급여의 제한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의료급여를 제한하거나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의료급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급여의 제한), 제19조(구상권), 제23조(부당 이득의 징수)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4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급여의 제한 사유 통보 등)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 민법, 근로기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배상법 등 개별법령



## (급여제한 관련 의료급여법 조항)

**제4조(적용배제)** ①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구상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6.12]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⑨ 제8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3 급여제한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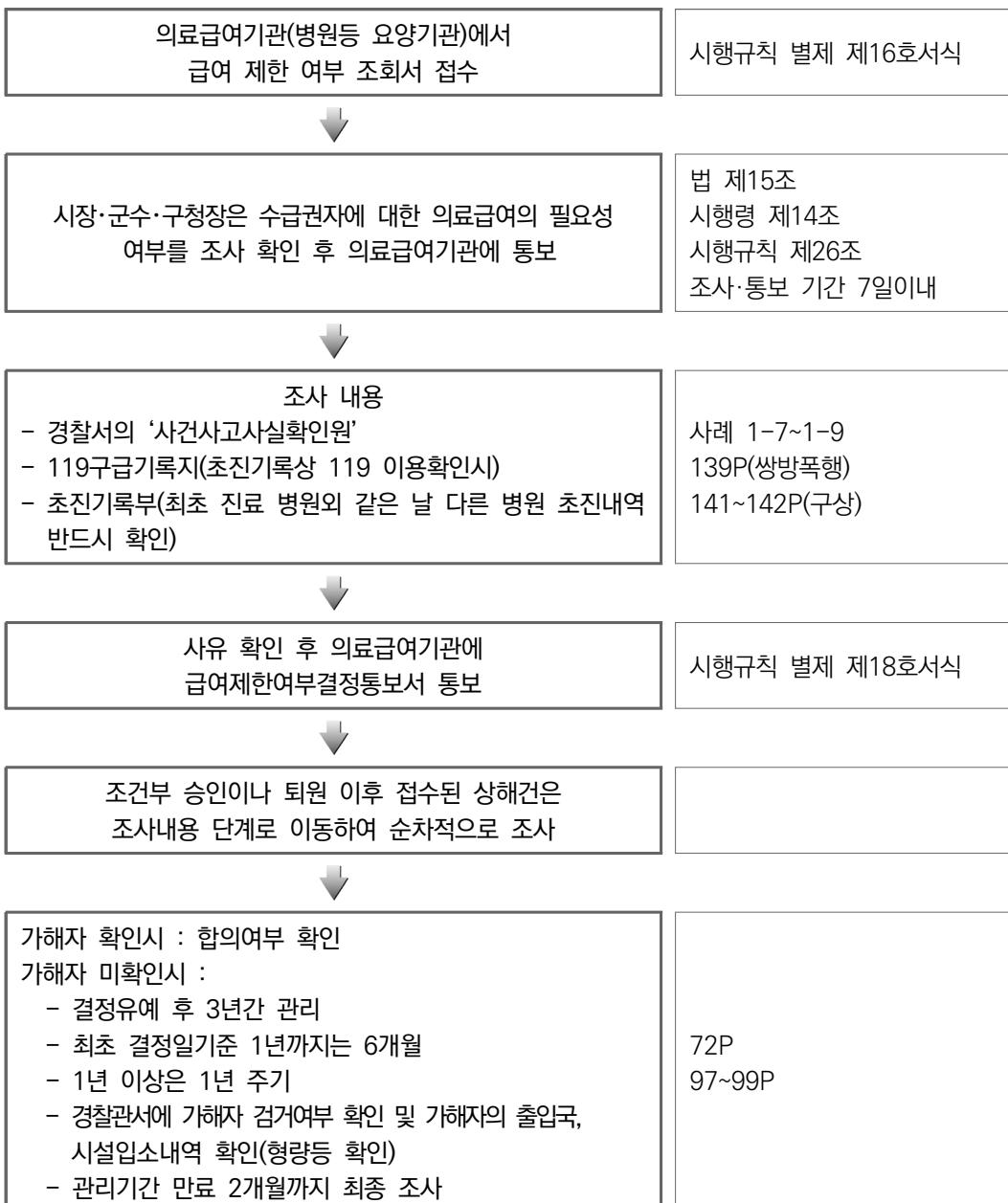
- 의료급여의 제한은 의료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현물급여의 경우에는 현물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질병, 부상 등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급여(현물급여),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상한금,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이 포함되며, 급여제한 후 재발하는 상병 (후유증)에까지 애초 급여제한의 효력이 미침
- 의료급여의 제한은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처분의 효과는 소급하는 경우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 의료급여 제한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는 당해 상병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상병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음
- 급여제한의 대상임에도 의료급여가 이루어졌으면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

## 4 급여제한 유형

- 질병·부상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쌍방폭행, 자해행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등 12대 위반사고, 중실화로 인한 화상 등
- 과잉보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법 제4조 제1항)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법 제4조 제2항)
  -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법 제19조 제2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5 상해요인 사례별 처리과정

### 1) 폭행사고





## 2) 교통사고

폭행사고의 1~2 단계 참조



## 조사 내용

- 경찰서의 '교통사고실확인원'
- 119구급기록지(초진기록상 119 이용확인시)
- 초진기록부(최초 진료 병원외 같은 날 다른 병원 초진내역 반드시 확인)

## 업무 매뉴얼

134~135(12대 중과실 사고)

사유 확인 후 의료급여기관에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통보

## 시행규칙 별제 제18호서식

※ 조건부 승인이나 퇴원 이후 접수된 상해건은  
조사내용 단계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뺑소니 사고 확인시 책임보험 한도내의 보상가능여부 확인
- 책임보험 보상내역은 자동차보험사에 가입여부 문의가능 (보험사 문의 제한없음)
- 뺑소니로 인한 기해자 확인 불능건은 결정유예 처리기준 처리
- 기해자와 합의의 시점을 확인하여 합의 이전은 '구상금'으로 기해자를 대상으로 결정, 합의 이후는 '부당이득금'으로 수급자에게 결정
- 합의서를 수급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결정하고 이를 고지 소송등을 진행하기 위한 최고서 발송, 합의서 제출을 압박
-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최초 사고 발생이후 일정 간격을 두고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한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양기관 진료내역이 30일 가량의 범위 안에서 동일상병 진료가 있었는지 확인 후 최초 진료기록부 확보

27~34P(고의행위, 중대한 과실)  
65~68P(손해배상 청구권)  
70~74P(소멸시효 기산점,  
급여면책, 합의의 효력)

### 3) 자살시도

폭행사고의 1~2 단계 참조



#### 조사 내용

- 경찰서의 ‘사건사고실확인원’
- 119구급기록지(초진기록상 119 이용확인시)
- 초진기록부(최초 진료 병원외 같은 날 다른 병원 초진내역 반드시 확인)

업무 매뉴얼 94P



사유 확인 후 의료급여기관에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통보

시행규칙 별제 제18호서식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의료급여 적용
- 자살시도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를 제외한 건에 적용

94P(자살시도자 의료급여)  
138P(자살시도와 관련 판례)



#### 4) 자기 신체 사고

폭행사고의 1~2 단계 참조



##### 조사 내용

-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실확인원’
- 119구급기록지(초진기록상 119 이용확인시)
- 초진기록부(최초 진료 병원외 같은 날 다른 병원 초진내역 반드시 확인)

27~34P(고의행위, 중대한 과실)



사유 확인 후 의료급여기관에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통보

시행규칙 별제 제18호서식



조건부 승인이나 퇴원 이후 접수된 상해건은  
조사내용 단계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자기신체 사고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범죄행위의 여부 입증에 따라 급여제한 또는 부당이득 환수대상
- 사고내역의 확인을 위해 교통사고, 일반사고 여부확인 및 구급 기록지 확인등을 철저하게 확인
- 초진기록상의 내용으로만 음주로 되어있어도 사법기관의 측정 결과 또는 판단내용에 음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로 인한 부당 결정은 불가
- 만취 상태였음을 추후 주장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등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에 해당 내역이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27~34P(고의행위, 중대한 과실)  
137P(고의 사고)  
사례 1-4(만취중 사고)  
사례 1-10(단순 조작 미숙)  
사례 1-14(위급상황 제지)

5) 관리감독 책임 사고(시설물 포함)

폭행사고의 1~2 단계 참조



조사 내용

-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실확인원'
- 119구급기록지(초진기록상 119 이용확인시)
- 초진기록부(최초 진료 병원외 같은 날 다른 병원 초진내역 반드시 확인)

41~43P 참조  
(국가배상)



사유 확인 후 의료급여기관에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통보

시행규칙 별제 제18호서식



조건부 승인이나 퇴원 이후 접수된 상해건은  
조사내용 단계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의 유형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관리하자의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로 나오게 됨
-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상의 문제가 기재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확인될 경우 관리상 하자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결정 가능
- 관리책임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를 경우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가능

사례 2-1(국가손해배상)  
사례 2-5(공공근로)



## 6) 산재사고

폭행사고의 1~2 단계 참조



### 조사 내용

-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실확인원'
- 119구급기록지(초진기록상 119 이용확인시)
- 초진기록부(최초 진료 병원외 같은 날 다른 병원 초진내역 반드시 확인)

35~37P(산업재해 보상)



접수된 상해건은 조사내용 단계로 이동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산재의 경우 최초 1차 병원 내원 후 상급병원으로의 순으로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사고 전후 2~3일 이전 이후 진료내역을 유사 진료여부 확인 후 확보
- 산재신청건을 본인이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산재가입여부를 확인 하여 산재로 인한 부당이득 결정사유여부 확인
- 산재 종료 이후 산재 후유증 여부 판단은 마지막 진료와 최근 진료까지의 기간, 상병명, 진료기록부상의 상병발생원인등의 내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140P(산재 결정)

## [참고]

## 119 구급대 이송사실 확인 통보

"함께하는 도민, 일등 경제 총력"



충청북도

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목 119구급대 이송사실 확인 통보(황0식 외 1명)

1.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공단에서 요청한 이송환자에 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며,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인적사항		신고일시	발생장소	사고원인	이송병원 (도착시간)	출동센터
성 명	성별,나이 (생년월일)					
김	여/34세	2019.01.19. 21: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화상		중앙119안전센터
내 용	- 뜨거운 물 담긴 유리컵을 들고 앉아있다가 유리컵이 깨지면서 성기 및 양 허벅지 안쪽 화상입었다함. 구급대 확인 시 양쪽 허벅지 안쪽 2도 화상이었으며 화상면적 약 5%, 깨진 유리 조각에 의해 오른손바닥 및 손등에 약 1cm laceration 3곳, 오른쪽 허벅지 안쪽 1곳 관찰됨. 상처 지혈 및 드레싱 시행함. 화상부위 N/S irrigation 및 sterile dx. 시행 하며 병원 신속 이송함					
시행정보						

이용자 인적사항		신고일시	발생장소	사고원인	이송병원 (도착시간)	출동센터
성 명	성별,나이 (생년월일)					
황	남/58세	2018.12.31 06: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질병 (옆구리통증)		중앙119안전센터
내 용	- 상기환자 3일전에 엎드려 일하다가 갑작스레 통증 시작되었다고 함. 부딪히거나 넘어진 적 없다고하며 신체검진 시 오른쪽 옆구리 통증 외 다른 징후 없으며, 오른쪽 옆구리 뒤쪽 두드렸을 때 통증있음.					
시행정보						

- ①번 사례의 이송내역을 확인하면 본인과 실에 의한 부상으로 확인되나 사고장소 사유등을 추가 확인하여 결정
- ②번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면 '일하다' 통증이 발생했음을 근거로 산재로 의심할 수 있으나 부상의 장소, 사유등을 확인하여 결정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성명	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해자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전화번호 : )			
운전면허	종별 : 제1종 대형 번호 :			
사고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소유자 : 정 )	
사고개요	발생일시	2019.07.17 14:20		
	발생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피해내용	인피 : 사망 0 , 부상 2 명      물피 : 원상상		
		#1) 차량은 석편분기점 방면에서 대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중, #2) 차량은 대련에서 석편방면으로 진행중, 위 일시 및 장소에 미르러 진행중이던 #1)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의 정면부위끼리 충격한 사고임.		
사고내용				
용도	보험회사제출용			
담당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12월 02일				

※ 해당사고는 사고원인의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이 명시되어 12대 중과실 사고로 확인되며, 해당 중앙선 침범의 사유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제 000059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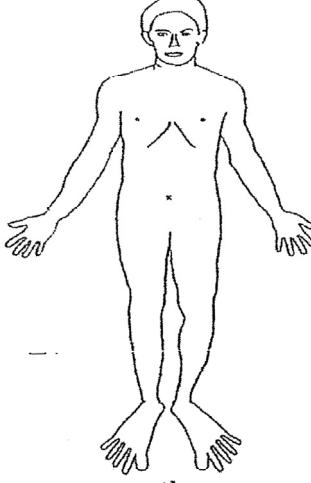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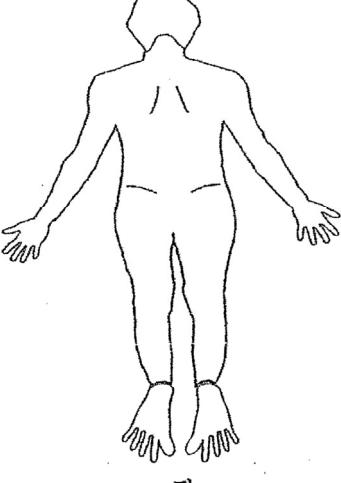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주시 상당구		
피해일시	2019-08-17 14:50:00		~ 2019-08-17 14:51:00	
피해장소	청주시 상당구			
피해상황				
사건개요 (신고내용)	별지와 같음			
접수(신고)일시	2019-08-17 14:55	응도	요청	
상기와 같이 피해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원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06일				
신청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 ( 피해자와(과)의 관계 : 무 )	
주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3				
귀하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 접수사실을 확인함.				
*사건접수번호:	( 2019. 08. 17 )			
*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의 응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산자료 대조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임음

사건개요 (신고내용)				
	<p>피해자 <b>지</b> 와 피혐의자 <b>고</b> 은 평소 알고 지내는 자이다          2019. 08. 17. 14:50경 청주시 상당구 단계로 1983,          차 가 경매 물건을 밭로 칸다는 이유로 피혐의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하자 손으로 목부위를 1대 폭행한 것이다</p>			
에서 피해				

※ 폭행사고의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확인을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며,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경우 의료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은 이해당사자 임을 주지시키고 제공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요청하여 공문으로 회신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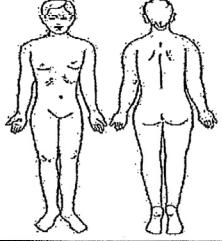


## 초진기록지

초진기록지							
성명	캐(	등록번호		성별	M	나이	30
C/C : incomplete amp Lt thumb				발병일시 : today			
P.I : 일하다다침							
PE :							
내원경로 및 수단 : 자발				Vital Sign :			
의식상태 : alert				최종식사 시간 :			
 앞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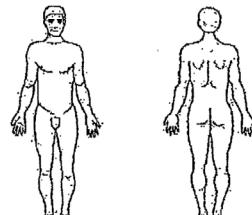
※ 초진기록지의 법률적 효력은 판례로 확인되므로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위 상병사유가 '일하다 다침'임을 감안하여 내원시간, 장소등을 확인하여 산재여부등을 확인하여야 함

## 응급센터 기록지

등록번호		생년월일	1960.02.22	응급센터 기록지	
이름	한	성별/나이	남 / 58		
주치의					
종합 병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000000	보험 유형	10	
최초분류 과정 ALABAO		15세 이상 비뇨기과	옆구리 통증	급성 중상성 통증(4-Lv.3)	
변경된 분류 과정 ALABAO		15세 이상 비뇨기과	옆구리 통증	급성 중상성 통증(4-Lv.3)	
발병일시		내원일시		진료일시	
내원수단	1	내원경로	1	내원사유	2
의도성	9	순상기전	-	사고당사자	-
Vital Sign BP 150 / 90 mm/Hg PR 74 / min RR 20 / min BT 36.0 °C BST -1 SP02 96 Wt -1 Kg					
응급증상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식수준 A <input type="radio"/> 임신 가능성 <input type="radio"/> 유 <input type="radio"/> 무 L M P -					
동증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input type="radio"/>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NRS 7 <input type="checkbox"/> FPS <input type="checkbox"/> FLACC <input type="radio"/> 옥청 유무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G/C) C0016199 Flank Pain bilateral flank pain C0230132 Anterior chest wall structure Anterior chest C0008035 chest wall pain pain, chest wall					
P/I) 3일전 작업한 후 Rt chest wall(back, inf) pain 발생. 1일전부터 악화되어 내원. dyspnea(-)					
P/H)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DM <input checked="" type="checkbox"/> HTN <input type="checkbox"/> TBc <input type="checkbox"/> Hepatitis <input type="checkbox"/> Asthma <input type="checkbox"/> Epilepsy <input type="checkbox"/> 기타					
Social Hx) 출연여부: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현재출연 <input type="radio"/> 과거출연 <input type="radio"/> 비출연 <input type="radio"/> 확인불가 음주여부: <input type="radio"/> 무 <input type="radio"/> 유 ( )회/주 ( ) Family Hx)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유 ( )					
ROS)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이소견없음 <input type="checkbox"/> Fever <input type="checkbox"/> Chill <input type="checkbox"/> Cough <input type="checkbox"/> Sputum <input type="checkbox"/> Rhinorrhea <input type="checkbox"/> headache <input type="checkbox"/> dizziness <input type="checkbox"/> Anoxia <input type="checkbox"/> Nausea <input type="checkbox"/> Vomiting <input type="checkbox"/> diarrhea <input type="checkbox"/> Watery <input type="checkbox"/> Loose <input type="checkbox"/> Constipation <input type="checkbox"/> 기타					
P/E) <input type="checkbox"/> 특이소견 없음 chest wall ta(+++) clear BS					
					
Impression S2080 주 출백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잘과심					
Plan cs adm					

※ 병원급 이상 응급실이 있는 경우 초진기록지와 응급센터 기록지를 동시에 요청. 위 응급실 내원 이전에 작업중 부상이 확인되므로 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3일전 다른 의료급여기관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확인될 경우 해당 병원의 초진기록 확보. 산재 은폐 사업장의 경우 최초 부상당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고 환자가 상태가 나빠져 사업장을 경유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 진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발생

## 외래 초진기록지

<input type="checkbox"/> 타병원 검사기록지	<b>외래초진기록지 (CS)</b>																									
<input type="checkbox"/> 타병원 혈상	등록번호	진료과	증상부위	성별/연령	M / 59	보험유형	보험																			
	수진자명	주민번호			초진일시																					
	조합기호	0000000000	명 청	-	증번호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BP: 150 / 90	PR: 74	RR: 20	BT: 36.00	BST:	SP02:	96																			
	Height:	Weight:	BMI:	BSA:	LMP:																					
C/C)	서류때리	Onset( )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margin-right: 10px;"> <tr><td colspan="2">숫자별증도구</td><td>점</td></tr> <tr><td colspan="2">얼굴증증도구</td><td>점</td></tr> <tr><td rowspan="6" style="vertical-align: middle;">통증 ○ 유 ○ 무</td><td>F</td><td><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td></tr> <tr><td>L</td><td><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td></tr> <tr><td>A</td><td><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td></tr> <tr><td>C</td><td><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td></tr> <tr><td>G</td><td><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td></tr> <tr><td>총점</td><td>점</td></tr> </table>			숫자별증도구		점	얼굴증증도구		점	통증 ○ 유 ○ 무	F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L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A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C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G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총점	점
숫자별증도구		점																								
얼굴증증도구		점																								
통증 ○ 유 ○ 무	F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L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A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C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G	<input type="radio"/> 0 <input type="radio"/> 1 <input type="radio"/> 2																								
	총점	점																								
P/I)																										
P/H)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 <input type="checkbox"/> 이상지질혈증( ) <input type="checkbox"/> 결핵( ) <input type="checkbox"/> 간질환( )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 ) <input type="checkbox"/> 수술력( ) <input type="checkbox"/> 중양( )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기타( )																									
Social Hx	출연정보 : <input type="checkbox"/> 비출연 <input type="checkbox"/> 현재 <input type="checkbox"/> 과거 ( ) 갑/일( )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																									
Family Hx	온주정보 :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 ) 회/주( ) 병/회																									
ROS)																										
P/EX																										
HMP																										
Plan																										

※ 해당 초진기록지는 통상 보험청구용으로 발급 받는 것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전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여 타법에 따른 보상유무 확인 후 결정

## 입원경과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공통)				
환	18021607	59/M	흉부외과	8102
■ CS[2018.12.31 Mon 09:46]	Rt thoracic pain 일하다 갑자기 12-29 좌발가락 내생발톱수술 motion pain			
■ CS[2019.01.02 Wed 09:52]	얼굴판서 미끌어진적있음			
■ CS[2019.01.03 Thu 16:34]	No evidence of fracture in bony thorax. No evidence of hemo/pneumothorax.			
Lungs are clear. No remarkable finding in mediastinum and hilum.				
■ CS[2019.01.05 Sat 16:52]	sx improve			
■ CS[2019.01.08 Tue 08:57]	Rt thoracic pain 10th rib region anal bleeding due to strain at anus			
■ CS[2019.01.10 Thu 10:27]	Rt thoracic pain			
■ CS[2019.01.10 Thu 16:42]	R10,11 ICNB			
■ CS[2019.01.14 Mon 08:35]	우측 염구리아래후방통증 motion pain			
■ CS[2019.01.16 Wed 08:42]	Rt knee pain			
■ CS[2019.01.17 Thu 08:05]	sx improve discharge			

※ 초진기록상의 내역이 확인 안될 경우 입원기록지나 간호기록지상에 상병발생 원인이 기재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초진기록으로 확인내역이 부족할 때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상병사실 확인

## 퇴원요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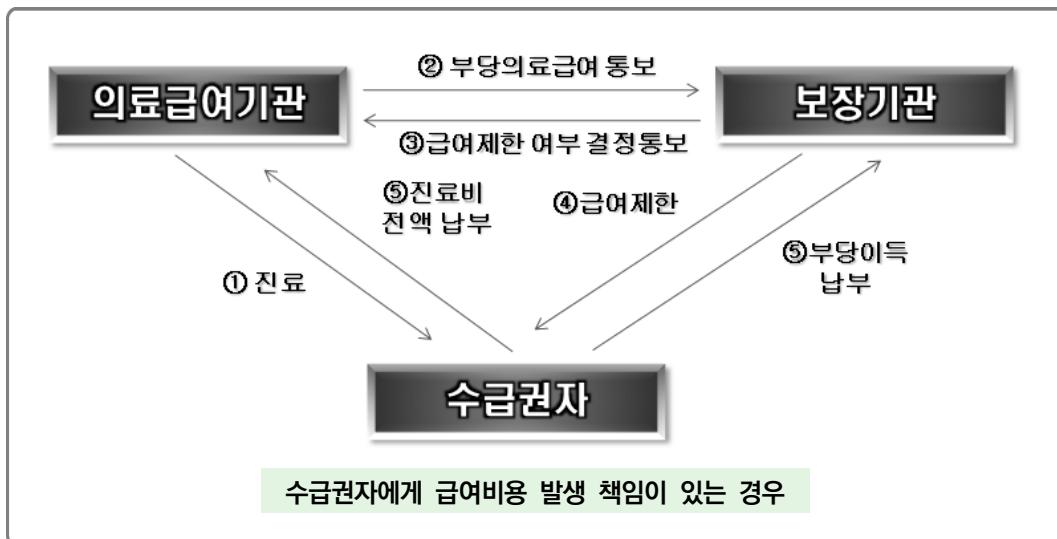
## 퇴원요약지

성		M / 58	CS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전화번호 : -	
입원과	흉부외과	입원일	2018.12.31	재원일수	18
퇴원과	흉부외과	퇴원일	2019.01.17	담당의	
전과					
주진단	S2340 늑골의 열좌 및 긴장				
부진단	S2080C 충격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팔과상				
수술 / 시술명	-- Non --				
주호소 (CC)	Rt thoracic pain				
현병력 (P.I.)	일하다 갑자기				
경과요약	after BR med PT sx improve				
검사결과	thoracic sprain				
퇴원약 처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트라스펜세미정 1 콕스케어캡슐 200mg(●) 2 유파탈-이지시립 15ml/포(번비) 3 텁스피드캡슐 0.2mg 7 아보다쁜연질캡슐 0.5mg (*BPH) 7 유팔트풀려스정 50/12.5mg (A+D) 7 배시케어정 5mg 7 HS				
후회 관리 계획	<input type="checkbox"/> 외래진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상발현시 내원 <input type="checkbox"/> 타기관에 의뢰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감염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합병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Post-OP <input type="checkbox"/> Procedure <input type="checkbox"/> Other				
퇴원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시퇴원 <input type="checkbox"/> 자의퇴원 <input type="checkbox"/> 달원 <input type="checkbox"/> 전원 <input type="checkbox"/> 사망				
퇴원시 환자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호흡(완체, 경폐) <input type="checkbox"/> 호흡안됨 <input type="checkbox"/> 진단뿐 <input type="checkbox"/> 가망없는 퇴원 <input type="checkbox"/> 48시간 이내 사망 <input type="checkbox"/> 48시간이후 사망				
담당 전공의 서명:					
담당 전문의 서명:					
작성일시: 2019.01.17 11:00					

※ 퇴원요약지의 경우 자주 발급 받는 서류는 아니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안은 아니나 초진, 간호 기록지등의 내용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확인을 위해 발급 후 확인

## 6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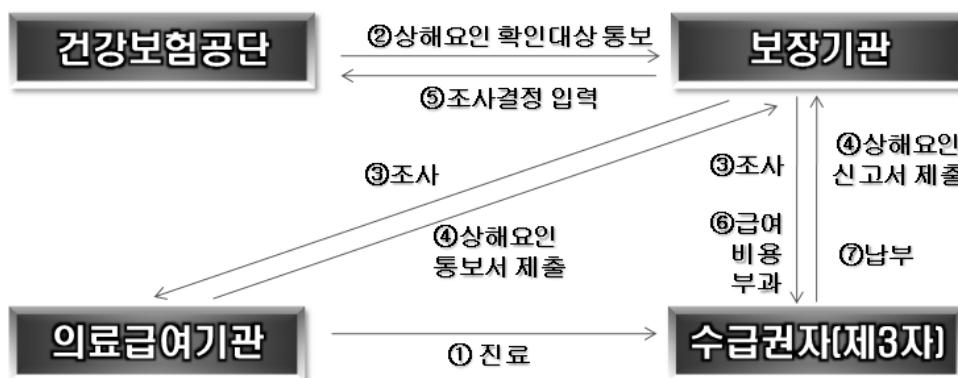
- 의료급여기관이 급여제한 여부를 통보한 경우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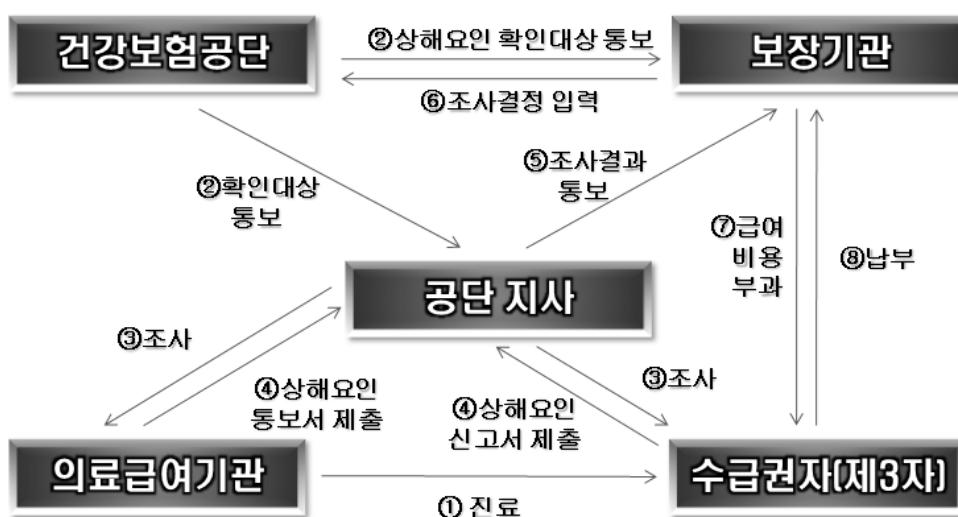


- 건강보험공단이 상해요인 확인대상을 발췌·통보한 경우의 처리절차

급여 발생 비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 발생비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7

## 업무수행체계

## ○ 관련 기관 및 역할

구 분	역 할 및 책 임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요인조사 및 급여제한 업무 총괄</li> <li>• 급여제한 업무 지침(매뉴얼) 제·개정 및 운영</li> </ul>
보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원 미만 건에 대한 상해요인조사</li> <li>• 급여제한, 부당이득 징수, 구상권 행사</li> <li>• 행정쟁송 및 사후관리</li> </ul>
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요인 확인대상 발췌 및 통보</li> <li>• 100만원 이상 건 상해요인조사</li> </ul>
의료급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요인 통보서 작성 및 보장기관 제출</li> <li>• 급여제한 사유 보장기관 통보</li> </ul>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요인 확인서 작성 및 보장기관 제출</li> <li>• 부당이득 납부</li> <li>• 제3자(가해자)는 구상금 납부</li> </ul>



## Ⅱ . 의료급여의 제한



## Ⅱ

## 의료급여의 제한

## 1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고의 사고

## (의료급여법상 상해요인)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 가. 급여제한의 개념 및 절차

## (1) 급여제한의 개념

-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직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장기관은 그 의료급여로부터 면책되는 것이고, 만약 의료급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부담한 의료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부당이득이 되고 따라서 보장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게 됨
- 해당 조항은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즉,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의료급여기관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제한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보장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은 지체 없이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을 송부하여야 한다.

- 보장기관의 급여제한통보서를 회신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에 의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고, 100/100 본인부담 시키거나, 급여가 개시되었거나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의료급여수가와 일반수가와의 차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2) 급여제한 절차

### ① 급여제한사유 통보 또는 공단의 상해요인 확인대상 발췌·통보

-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의 제한사유(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1호 또는 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권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시행 규칙 제16호 서식 ‘급여제한여부조회서’ 양식에 의거 통보

### ② 조사

- 시·군·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의 장으로부터 급여제한사유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에 통보(시행령 제14조 제2항)
- 보장기관(공단 지사)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상해요인 확인대상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 및 수급권자로부터 ‘의료급여 질병 부상등 상해요인 통보서’, ‘의료급여 질병 부상등 상해요인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조사

### (급여제한 조사 전 확인 사항)

- ① 대상자가 관할 보장기관 수급권자인지 확인
- ② 상병발생 원인과 부위의 일치 여부 확인  
(최초 진료여부 확인 및 최초 진료기록지의 진술내용 확인)
- ③ 가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서, 소방서의 사건사고접수, 구급기록지등 유무 확인  
(사건사고사실확인서의 경우 당일접수 안되는 경우 있으므로 추가 확인 필요)
- ④ 사건, 사고에 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징구(대상자 또는 보호자)

### ③ 결정 및 통보(회신)

-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부당의료급여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를 의료급여기관에 회신
- 보장기관은 상해요인 확인대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급여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수급권자에게 통보하고, 행복e음에 급여제한 여부 입력

### (3) 의료급여기관 급여제한 미통보 시 조치

- 의료급여기관이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도 보장기관에 제한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는 의료급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통보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경우 급여비용을 보장기관이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제3자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구상금과 의료급여기관에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급여의 제한은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수급자 또는 제3자의 행위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수급자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른 조치이므로 단순히 급여의 제한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함

### (4) 급여제한의 예외 적용(급여제한의 면책)

-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급여제한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의료급여 제한사유 통보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조사한 결과,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 또는 일부의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가능
- 일부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는 우선 급여를 하고, 사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① 법 제 15조 본문 단서의 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제한 사유 통보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조사한 결과,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 또는 일부의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

## 나. 의료급여제한의 요건

### (1) 고의 행위

- “고의”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책임변식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7020 판결참조).
- 의료급여법 제15조의 급여제한 사유는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 대한 해석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급여사고를 발생한 경우로 한정

### (2) 중대한 과실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 39548 판결 참조).

- 급여제한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참조)하여 의료급여를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 급여제한사유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장기관에 있음
- 그러나, 급여제한을 받는 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원인<sup>1)</sup>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수급권자가 증명해야 함
-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사고나 실화의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불가항력적인 사항 등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이 없는 한 급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개별사건의 발생 원인을 개별적·구체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례

- 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로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98도832 : '98.7.28).
- ② 온풍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온풍기를 내버려 둔 채 화재발생장소를 벗어난 지 5분 후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재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대법원 94다35107 : '94.11.25).

1) 책임 없는 원인 :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제3자의 행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3) 범죄행위에 기인

- ‘범죄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고의적인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 및 특별법령(도로교통법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해당(대법원 90.5.22. 선고, 90누 752판결)되고, 범죄행위가 성립한 경우 기소여부 및 형 집행여부와는 무관함.
- 범죄행위의 성립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 어떠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려면, 형별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규를 위반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가 비난받을 수 있는 유책의 행위(책임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례]

- ◉ 13세 미성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급여제한 여부
-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에 의해 수급권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므로,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급여 제한 처분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책임성 요건 결여)

-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란, 범죄행위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은 명백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보장기관에 있으며, 이는 보장기관의 재량을 넘는 수급권 제한이 수급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범죄행위 및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장기관에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범죄행위 여부의 판단은 관계법령의 금지·의무 규정과 사법기관이나 경찰관서 등의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판단.

※ 사건접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119 구급기록지, 초진기록지등을 참조로 범죄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판단.



## (참고 : 의료급여법 규정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 불이행 급여제한)

## (1) 취지

- 의료급여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수급권자로 하여금 적정한 진료를 받게 하여 상병치유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이러한 법상 준수사항이나 진료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질병·부상 등에 대한 치료를 자연·학대시켜 의료급여비용을 증액시키므로 의료급여제도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2)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의 사용(타인 양도금지, 반납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상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납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내용 확인 등이 해당

## (3)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진료에 관한 지시”란 의료법 제22조에 규정한 요양방법의 지도를 포함하여 진료를 받는 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상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학적인 지시를 의미
-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란 작위 지시에 대한 부작위, 부작위 지시에 대한 작위행위를 말하며, 명백한 의사 지시는 물론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단서나 의견서 등에 의하여 진료의 지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현저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교정함에 다른 수단이 행하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수급권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무조건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중 질병·부상을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제한이 가능하며 단순한 과실로 인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수 없음
- 급여제한의 범위는 당해 상병에 대하여 향후 급여제한이 가능하고 이미 급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급여제한을 할 수 없으며, “향후”란 진료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시점부터라 할 수 있음
  - 지시한 이후 이미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급여제한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 2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의 급여제한

## 가. 산업재해 보상

## (1) 개요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사회보장 법령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을 말하며,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이중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은 고용관계만 성립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이 있음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라 한다)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

## (2) 업무상 재해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의 재해, 업무상 또는 공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부상·재해의 발생에 이와 같은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 업무 또는 공무상의 행동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
- 관련판례 참조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 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두7669 판결참조).

## (3)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방법 및 절차

### 1) 개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향후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급여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의료급여비용을 회수

## 2) 의료급여 비용 청구 및 반환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재해발생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기 이전까지의 급여비용을 청구(보장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청구대상 :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 청구처 : 산재를 승인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
- 청구시 첨부서류 :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정내역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심사평가원 제공), 요양비 청구서, 입금통장 사본 등

-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소송 등을 통해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요양급여가 삭감된 경우, 기 지급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장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보험자 부담금을 반환해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근로기준법 제9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되므로 가급적 3년 내 청구



### (산업재해 미신청자 의료급여 진료 건 업무처리 요령)

- 상해요인 신고서 및 통보서, 관련자료 확보 등 상해요인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조사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확인되면 부당결정(여기서의 '부당결정'은 법19조의 구상과 23조의 부당 이득 모두를 말하는 것임)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재해근로자인 경우
  - 재해근로자에게 2회 이상 문서로 산재신청을 계도하였으나,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수급자에게 부당 결정
    - ※ 계도할 경우 근거가 명확히 남을 수 있도록 문서로 계도
  - 재해근로자에게 산재요양승인 신청을 2회 이상 계도하고 재해근로자가 산재신청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당 결정(법 제23조 부당이득 환수)
    - ※ 산재 불승인 사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당급여
  - 재해근로자에게 2회 이상 산재신청을 계도하여 산재신청을 한 경우, 결정유예로 관리하고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산업재해 승인자 의료급여 진료 건 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재해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부당 결정(법 제23조 부당이득 환수)

## 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1) 개요

-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해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타인의 인체손해에 대한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함
- 운행자의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과 구별되는데, 운전자의 책임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운전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승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으로 손해 배상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실책임을 지는 반면, 운행자책임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체손해(사망, 부상)에 대한 무과실 책임

## (관련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17253 판결, 1998.10.27. 선고 98다36382 판결)
  -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는 그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 통념상 위탁자 등이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667 판결과 1992.5.12. 선고 92다6365 판결의 사안 및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8212 판결, 1999.5.14. 선고 98다57501 판결)
  - 운행자에는 자동차의 소유자,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 운전자 등이 포함

**2)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함. 다만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7.9.17. 선고 99다22328 판결 참조)

### (3) 자동차 책임보험과 보상범위

#### 1) 보상범위 및 한도

-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보험회사는 각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지며, 각 보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한도액이므로 사고횟수와 관계없이 자동 복원되며 1사고 당 한도액은 없음
- 자동차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보험금은 최고 1억5천만원, 부상 보험금은 최고 3,000만원(1등급)에서 최저 50만원(14등급)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최고 1억5천만원(1등급)에서 최저 1천 만원(14등급)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임

####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은
  - ① 승객이 아닌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
  - ②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면책 요건은
  - ① 자기 및 운전자의 무과실
  - ②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 ③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을 것, 이를 입증해야만 면책 가능

## 다. 국가 등에 의한 손해배상

### (1) 개요

-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의 유형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것과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 있으며,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이고(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동법 제5조 제1항)을 말함

#### [관련법령(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2)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와 손해배상

####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①공무원의 직무행위, ②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 2) 배상책임자

-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모두 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 가능

## 3) 배상청구권의 시효

- 국가배상법 제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3250판결, 대법원 1999.3.23. 선고 98다30285판결 참조)

## 4) 손해배상청구절차

-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 청구절차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절차와 같이 배상심의회에 배상청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음

## (3) 공공시설의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요건으로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임

### 2) 배상책임자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권 행사 가능

### 3) 배상청구권의 시효와 청구절차

- 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을 따름,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을 따름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동일함



### III. 의료급여비용의 환수



### III

## 의료급여비용의 환수

### 1

### 구상권제도

#### 가. 제도의 개요

##### (1) 구상권제도의 의의

###### ○ 의미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와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할 것임. 이에 수급권자는 그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경우 수급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기관이 대위하게 됨으로써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구상권임.

###### ○ 이중보상의 방지

-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와 보장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의료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경우 이중보상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 ○ 제3자의 책임면탈 방지

-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의료급여를 행하게 되면 제3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보장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함

###### ○ 의료급여재정의 건전성 확보

-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킨 책임에 따라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회수하여 손실된 의료급여재정을 보충함으로써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함



## (2) 구상권의 근거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 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구상범위

### (1) 구상권행사의 요건

#### 1) 제3자의 행위일 것

- “제3자”라 함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의료급여를 한 보장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은 피해자인 수급자 및 그 수급자와 의료급여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 수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다1878판결 참조)
  -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민법 제755조), 사용자(민법 제756조), 도급인(민법 제757조)
    -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자(제2조, 제5조)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다른 자동차운행자(제3조),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 상법 제724조제2항)
    -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여객운송사업자 등

-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3자의 행위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책임능력이 있는 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행위로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상관없으며,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등 위법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행위도 포함

## 2)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

- 제3자의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로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부상·사망 등이 발생했어야 하며, 제3자의 행위와 의료급여 사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의료급여를 한 때”라 함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짐. 따라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를 말함(대법원 1994.12.9. 선고94다46046 판결)

## 3) 위법한 행위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권리가 발생할 것

-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 또는 계약(채무)불이행이라는 위법행위가 존재해야 함
-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加害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加害행위, 加害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加害행위와 손해사이 인과관계, 加害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
- 민법상 특수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의무를 인정

### (2) 제3자의 일반불법행위 구성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고의

-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거나 이를 용인하여 행동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말함.

- 미필적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말함.

## 2) 과실

- 과실이란 부주의로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 혹은 예견하지 못하고(인식 없는 과실) 혹은 인식하고서도 인용하지 않은 채(인식 있는 과실)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함.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중과실을 의미함.
  - 의료급여의 제한행위에 ‘범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것 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경과실의 경우에는 그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우연히 발생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의료급여사고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고의범과 중과실로 한정(헌법 재판소 2003.12.18. 2002헌바1결정)
- 고의·중과실은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성립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입증책임은 불법 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보장기관에 있음

## 3) 책임능력

-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가 위법하여 법률상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으로서 불법행위능력이라 함.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에 관한 인지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무능력자가 됨.
- 민법상 책임능력을 정하는 일반규정은 없으나, 제753조 및 제754조에서 책임변식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책시키는 규정을 둠으로써 책임능력의 존재를 불법행위책임의 전제로 소극적 인정.
- 판례는 책임능력을 법률상 불법행위책임을 변식할 지능 또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12세이면 책임능력이 없고, 15세이상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며 13세와 14세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달라짐.

※ 민법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로서 그의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 제753조), 감독의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755조). 그러나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3조), 이러한 보호·교양 의무의 일환으로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친권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경우 민법 제753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친권자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0. 선고 2006가합20288 판결).

####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3조에 의거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판정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개개행위에 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부모와의 경제적 의존관계·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실제적인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
-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이란 판단능력이 없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와 같은 정도의 판단력 상실을 의미하며, 불법행위 당시에 그 행위자가 심신상실자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심신상실의 상태나 금치산 선고의 유무는 관계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능력 결여를 인정하지 않음

#### 4) 위법성

-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하며. 위법성의 판단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
- 통상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없어지게 되는데, 정당방위(민법 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 (민법 제761조제2항),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있음

※ 정당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참조(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

#### 5)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비록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 없거나 상호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함(대법원 1990. 6.26. 89다카7730), 피해자의 증명은 개연성을 표시하는 정도로 무방하며 가해자 측에서 반증이 없는 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1974.12.10. 선고 대법원72다1174 판결).

### (사례)

- ◉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 Ⓐ 위의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9.7.13. 선고 99다19957 판결).

### (3) 제3자의 특수불법행위 구성요건

####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가) 개념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책임 무능력자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것이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 자는 그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한 과실로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짐.
-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의 요건인 과실은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추정되므로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요건(불법행위 + 감독의무 해태)

-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
  -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어야 함(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065 전원합의체 판결).
-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 하였을 것
  -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의무가 아니라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이면 족하며,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범위는 생활관계의 전반에 걸치며 판례는 감독의무자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과하고 그에게 감독의무의 해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 (다) 배상책임자

- 법정감독자
  -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후견인(민법 제928조), 금치산자의 후견인을 들 수 있고,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대하여는 처·부모·호주의 순서로 책임을 짐
  -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하여(민법 제913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의무위반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판례)
  -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규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한 과실로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

#### ○ 대리감독자

- 법정감독의무자와의 계약 또는 법률에 기초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유아원·유치원의 원장이나 보모, 초등학교의 교원, 정신병원의 의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실상 감독을 하는 일가의 세대주나 아동복지시설 원장 등도 포함되며, 대리감독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됨
- 민법 제756조의 제2항 소정의 대리감독자라 함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반드시 일정한 작업장의 최고책임자에 국한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이에 해당한다(수원지방법원 1999.12.12. 선고 99가합10908 판결).

#### ○ 연대책임

-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의 책임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양자에게 각각 감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책임은 각각 인정되며, 이때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책무**로서 피해자는 전부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민법 제722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한편, 책임능력은 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2) 사용자 책임

### (가) 개념

-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 사용자책임은 사용자 자신의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측면과 민법 제756조제3항에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피용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대위책임이라는 측면이 있음
-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자의 면책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사용자 책임의 요건

-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을 것**

#### ① 사용관계

- 사용자와 불법 행위자와의 사이에 어떤 사무를 종사하게 하는 실질적인 사용·피용의 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무”라는 것은 통상의 일로 그것이 사실적이든 법률적이든,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계속적이든 일시적인 것인지를 불문하고, 기업 활동에 관한 것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무관

- 고용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 조합 기타 어떤 관계라도 좋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도 묻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으면 되고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이 무효라도 상관없음
- 피용자란 사용자가 선임하고, 또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선임·감독관계도 사실상으로 충분하며 명시뿐만 아니라 묵시에 의한 선임도 해당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 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 ② 하도급의 경우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유무는 하도급 관계의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실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 위치에 있음
-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 ③ 명의 대여자의 책임

- 사용관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명의 대여자가 객관적으로 명의 사용자에게 지휘·감독할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관계당국에 등록하고 그 면허를 받은 명의인은 그 자동차 운행에 관하여 피용인을 지휘·감독할 의무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자이므로 피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한편,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에 해당하는 지입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그 지휘·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5302 판결).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객관적으로 행위가 사무의 범위 내라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외형상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당한 관련 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대법원 79다1867 : '80.1.15)
-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제3자라 함은 사용자와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를 말하며,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피용인 사이에서도 한쪽이 업무상의 행위로 다른 피용인에게 손해를 주어도 사용자로서는 배상책임이 있음(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1232 판결)
-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 면책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까움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대리 감독하는 자란 공장장이나 지점장, 현장감독 등 감독기관이 피용인의 선임·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사용자의 과실로 봄

## (다) 손해배상 책임

-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가 법인의 대리감독자라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이사가 법인의 기관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용인의 선임·감독을 담당하는 한도 내에서 대리감독자로 책임을 지는 것임
- 피용인의 책임
  - 피용인은 사용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양자의 책임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판례 및 학설)에 있으며,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피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사례)

- ◉ 커피숍 종업원이 커피잔을 들고가다 넘어지면서 커피잔이 깨어져 그 파편에 손님이 부상을 입고 진료받은 경우?
- Ⓐ 종업원에게는 민법 제750조,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으로, 커피숍 영업주(주인)에게는 민법 제756조,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부진정 연대채무자로 구상권을 행사함
- ◉ 대규모할인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범행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 대규모할인점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여성 고객에 대한 강도상해에 대한 운영주체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함(단 그 책임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5.6.2. 선고 2004가단23419 판결)

## 3) 수급인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책임

## (가) 도급인의 책임요건

-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함(2002.8.23. 대판 2002다12239 선고).
- 수급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75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적용되어 사용자 책임을 지게됨
-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판례)
  - ① 도급인이 공급하는 공사 자재를 사용한 경우
  - ② 도급인 소유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 ③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수급인이 고용한 피용자의 임금을 지급해 온 경우
  - ④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그 피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감독한 경우
  - ⑤ 도급인이 공사현장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
  - ⑥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는 방법으로 시공 자체를 관리한 경우
-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 안되는 경우(판례)
  - ① 도급인 및 그 직원이 수급인이 행하는 공사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② 도급인의 지휘, 감독이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고 공사의 운영 및 시공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의 관리에 불과한 경우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 (가) 개념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아야 함(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 101343 판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1차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
  - 수급인의 하자있는 공사에 기인한 공작물 붕괴사고와 점유자인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계약이 해지된 후 공작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어 그 소유 및 점유하에 있던 중 공작물의 붕괴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위 붕괴의 원인이 수급인의 하자있는 공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인 소유자는 점유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다888 판결).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의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공작물 책임의 요건

- 공작물에서 손해가 생겼을 것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설치 전·후)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경우
- 하자의 주장·입증책임 : 피해자

(다) 책임의 주체 : 1차 점유자, 2차 소유자

- 점유자
  - 공작물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독립적 권한으로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안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공작물 책임이 발생. 간접점유자로서 보수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자는 점유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유자
  -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 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 소유자가 책임을 지며, 소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

5) 동물점유자 책임

(가) 개념

-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9조)이며, 성립요건으로는 동물이 손해를 가하였을 것,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면책사유가 없을 것 등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014.12.30. 개정>

## (나) 책임의 요건

-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 동물의 종류는 관련이 없으며, 만일 동물을 사주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는 동물을 점유한 사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 적용
-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해 동물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각 경우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관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 (다) 배상책임자

- 동물의 점유자
  - 동물을 사실상 점유하는 자로 타인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스스로 점유하는 자도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
- 보관자 : 수취인, 운송인과 같이 타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자를 말함

## (사례)

- Q** A 소유의 개를 B가 1년 6월 가량 사육하여 오던 중 B의 지인 C가 동 개를 물고 산책을 하다 본인의 사무실 입구에 매어두고 볼일을 보는 사이 8세의 어린이가 개에 물려 진료를 받은 경우?
- A** B는 동물의 점유자로 민법 제75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을, C는 개의 보관자로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B를 연대로 구상권 행사(A는 구상권 행사 불가)
- Q** 소유주 A는 자신의 개를 반려견 행동 교정전문가 B에게 교정을 위탁한 후 두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C를 물어 부상을 입혀 진료를 받은 경우?
- A** A와 B는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개가 C를 물게 하여,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A와 B를 연대하여 구상권 행사(서울 중앙지법 2018.1.12. 선고 2017나52612 판결)

## 6) 공동불법행위 책임

### (가) 개념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 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대법원 1989.5.23. 선고87다카2723 판결)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나)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 ①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공동불법행위
  -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할 것
    - 행위자 각 개인에게 고의·과실과 책임능력이 있고, 각개인의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수인의 행위가 각각 독립하여 일반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행위자간의 행위가 관련 공동이 있을 것
    - 각자의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 공동하여 손해의 원인을 이루어야 함
- ②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공동행위자일 것
    -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인 가해의 위험이 있는 집단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자
  - 공동행위자 중 누군가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예컨대, 수인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칼로 상해를 했든가 또는 수인의 투석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에 그 상해가 공동행위자중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



인지 알 수 없을 때 공동행위자들은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부진정연대 책임)을 부담

- 각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각자에 대하여 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등이 필요하며, 이 경우 관련 공동은 공모 또는 공동인식은 없으나 행위는 공동함을 의미하며, 가해행위를 하지 않거나 자신이 가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
- ③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 교사자나 방조자는 위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는 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

#### (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책임의 연대성
  - 공동불법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부진정 연대채무로 인정
- 배상의 범위
  -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전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간의 책임의 경중 및 그 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음

#### (사례)

Q A, B, C가 합세하여 D에게 부상을 입혀 D가 진료를 받은 경우?

A 민법 제760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가해자인 A, B, C를 연대로 구상

Q A, B, C가 차례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씩 가격하여 D가 뇌출혈의 부상을 입고 진료를 받은 경우?

A A, B, C의 가해행위 중 D의 뇌출혈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 B, C를 연대로 구상

Q A, B가 사전 공모(교사)하여 C를 유인한 후 B가 C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C가 부상을 입고 진료받은 경우?

A 교사의 경우 A, B를 공동정범으로, 방조의 경우 A, B를 공동정범으로 인정, 민법 제760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 B를 연대로 구상권 행사

##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과 구상범위

### (1)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 제3자의 행위로 수급권자에게 발생된 의료급여 사유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보장기관으로 이전
-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대위 취득권(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 이전의 통지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위의 효과가 발생된 이후에 이전한 권리는 보장기관 이외의 타인이 행사 또는 처분할 수 없음

### (2) 구상권 취득 시기

-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의료급여가 이루어지고 보장기관은 그 의료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대법원1994.12.9. 선고 94다46046 판결, 2012.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 (3) 구상권의 범위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피해자인 수급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의료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의료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후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08.5.8. 선고 2008다641 판결, 2010.4.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쌍방과실로 인한 과실상계는 확정된 판결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결정가능(보험사 또는 당사자간의 임의적 과실비율은 인정불가)

##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범위 예시(대법원 2002다50149))

- 총진료비 : 1,300,000원(기관부담금 1,000,000원, 본인부담금 300,000원)
- 과실비율 :加害者 70%, 受害者 30%
  - ☞ 현물급여 구상범위(총진료비×과실비율)
    - 加害者 : 910,000원(1,300,000원×70%)
    - 受害者 : 390,000원(1,300,000원×30%)

## ○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구상범위(기왕증의 기여도)

- 수급권자인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서 수급권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며,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517 판결)
  - 후유장애가 기왕증에 의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
- 다수의 제3자 행위가 결합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당해 의료급여사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의료급여사유 발생에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
  - 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다수의 제3자의 행위기여도 등과 관련하여 각 행위자간의 부담분에 대해 다투 수 있으나, 이는 연대채무를 이행하는 다수의 제3자들 내부 간에 정산되어야 할 연대채무간의 구상관계에 불과하므로, 보장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민법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등에 규정된 방법을 통하여 다수자 중 어느 일방 또는 다수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의료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 별로 구상 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9.24. 선고 2006다69712판결).

#### (제3자(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상권의 행사(민법 제414조, 제760조))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에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4) 손해배상청구권의 면제·포기와 구상권

##### 1) 청구권이 보장기관에 이전되기 前의 효력

- 청구권이 보장기관에 이전되기 전에 의료급여를 받을 자가 담합(합의), 화해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급여를 받을 자의 보장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청구권도 면제범위 내에서 상실
- 보장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료급여를 하였다며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그런 사실을 보장기관이 알고 있다면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않아도 됨

##### 2) 청구권이 보장기관에 이전되고 난 後의 효력

- 가해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 즉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장기관에 이전되고 그 범위만큼 피해자의 권리는 축소



### 3) 처분권의 박탈

- 청구권을 이전한 후에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가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포기·화해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효행위임
- 즉, 제3자가 이미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를 지급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보장기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고, 보장기관은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후에 이루어진 제3자와 피해자인 의료급여를 받은 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구애됨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요 급여비용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의 면제·포기와 구상권 예(例))

##### ● 개요 : 1.1 사고발생, 9.30일 진료가 종료된 경우에

###### ①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청구권의 포기, 면제 포함)가 기관부담금 발생 전(前)인 경우

☞ 급여제한 또는 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에게 기관부담금 전액 부당이득 징수

###### ② 진료가 진행 중인 5.1일 합의(청구권의 포기, 면제 포함)가 이루어진 경우

☞ 5.1 이전 발생한 기관부담금은 보장기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청구권 이전)

☞ 5.1 이후 발생한 기관부담금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 급여제한 또는 부당이득 징수

###### ③ 급여비용 발생 기간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보장기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라. 구상권의 행사

### (1) 구상권의 법적 성격

- 구상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상권 행사로서 고지한 기타 징수금 납부 고지 행위는 의료급여에 관한 행정처분이 아닌 민사상 채무이행의 최고, 독촉 행위에 불과

### (2) 행사방법

#### 1)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보장기관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납부최고하여도 가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실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9조 등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최고의 효력은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따라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 최고 이 후 채무이행자가 이행의 유예를 원하는 경우

※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 이행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임(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9467 판결).

## 2) 민사법원의 관할

- 구상금에 대한 보장기관과 가해자의 다툼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아니므로 행정쟁송 절차에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름

## (3) 구상금 납부의무자 선정

- 구상금 결정의 납부의무자는 당사자 능력이 있고, 권리의무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자연인은 연령·성별·국적에 상관없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자연인이 사망하면 당사자 능력을 잃지만 파산으로는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사단·재단법인, 영리·비영리법인, 내국·외국법인에 관계없이 모두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으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여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서 외부에 대해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이나 공공조합 등 공공법인도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으나,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인의 지방조직이나 내부 부서에 불과한 지점, 분회 등도 당사자 능력이 없음

#### (4) 소멸시효

##### 1) 시효기간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손해발생 사실 및 제3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
- 3년의 기간은 시효 중단 등이 인정되는 소멸시효기간이나, 10년은 기간준수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거나 중단 등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존속 예정기간(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임

#####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 후유증 진료의 시효기간 및 기산점
  - 예견된 후유증의 경우, 시효기간 및 기산점은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손해와 가해자 모두를 안 날로부터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예견되지 않은 후유증의 경우에는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기산되며, “사유가 판명된 때”라 함은 의사의 진찰을 받고 후유증이 있음을 알게된 때를 의미하나, 후유증의 예견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수액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150 판결).

## 마. 보장기관의 급여면책

### (1) 입법 취지

-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관에 불과하므로,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 전에 수급권자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 기타 합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항은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전에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이중적인 손해전보 배제, 즉, 의료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 보완관계에 따른 조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

### (2) 급여면책의 요건 및 범위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6.12.]

-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 “손해배상을 받은 때”라 함은 화해가 성립된 때가 아니라 현실적·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지불된 것을 의미
  - 면제나 포기·화해 등은 진정한 것임을 요하며, 화해 등이 착오에 기인하거나 보장기관의 부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면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급여를 행하여야 하며, 의료급여 비용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구상



## 급여면책 관련 판례(대법원 76다2119)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보장기관)가 대위하기 전에 보험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자가 스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보장기관)는 그 면제·포기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의료급여)를 행할 의무를 면한다.

## ○ 급여면책의 범위

-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의무가 면제되는데 “배상의 한도 내”라는 것은 현실로 수령한 배상액이며, 청구권자가 판결 등으로 채권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진정으로 포기·면제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 전체가 배상액의 한도가 됨

## (3)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의 효력

## 1) 의료급여 개시 전에 합의한 경우

- 가해자의 배상(화해·포기·상계 포함)은 청구권 이전 전이므로 완전한 효력이 있고, 의료급여를 받을 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의무는 면제됨
- 보장기관이 배상 또는 화해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자에게 의료급여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는 구상할 수 없고,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 2) 의료급여 중에 합의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중 또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1차 진료 종료 후에 가해자로부터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의료급여에 대하여 보장기관은 의료급여의 책임이 면제됨

##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 시 처리요령)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가해자 또는 변제책임자와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내용에 관한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합의시기와 합의내용에 따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의무자를 선정

-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보장기관의 구상권은 가·피해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므로 의료급여의 한도내에서 가해자는 보장기관에 대항할 수 없음
- 합의와 관련된 판례
  - 선행진료비 합의에 대한 판례
    - 보장기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전의 치료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만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비록 가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장기관의 의료급여법에 따른 구상금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서울민사 2005나7243, 2005가소114144).
  - 퇴원 당일 합의에 대한 판례
    -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므로 퇴원일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입원치료의 연속성에 비추어 보면, 퇴원시간과 합의 시간과의 선후에 관계없이 이미 합의하기 전의 현실적으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퇴원일의 의료급여에 대하여도 가해자가 그 이후 합의로써 보장기관에 대항할 수 없다(인천민사 2010.10.18. 2007나7560).
  - 의료급여 이후의 수급자의 손해배상포기에 대한 판례
    - 의료보호법상 보장기관의 의료급여의무 이행자인 의료급여기관이 요양·분만 등의 급여를 한 때에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것이고, 피해자인 수급자가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배상채권은 보장기관에게 이전되어 대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급여 이후 피해자인 수급자의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는 이미 지급된 의료급여의 한도 내에서 보장기관의 대위 청구권에 대항 할 수 없다(서울민사 1989.4.12. 88나22826).
  -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결과의 발생과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 판례
    - 약 10주면 완치된다는 담당의사의 말과 가해자측의 간청으로 가해자로부터 약70만원을 받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행위를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치료기간 이 무려 9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더구나 완치되지 못하고 장애인이 되었다면 위 합의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결과 및 그 치료기간 등을 잘못 알고 가해자측의 주장에 넘어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이유로 한 취소는 유효하다(대법원 1981.4.14. 80다 2452).

- 합의가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인정된 판례

→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사고를 처음 당한 무경험의 유족이 가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하에서 본 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경솔하게도 1주일밖에 되지 않은 때에 그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정하여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경솔·무경험과 궁박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79.4.10. 78다2457).

### 3) 의료급여 종료 후에 합의한 경우

-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된 경우이므로 수급권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로 완전한 배상을 받거나 또는 배상권을 포기·면제하더라도 보장기관의 구상권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 4) 공탁과 구상권 행사 등

- 피공탁자(피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 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80다 629),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7784 판결).
-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한 경우
  -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 2 부당이득의 징수

### 가. 제도의 개요

#### (1) 일반적 의미의 부당이득

-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산적 이득에 대하여 공평의 원칙에서 그 시정 내지 균형을 꾸하는데 목적이 있음

#### (민법상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2) 의료급여와 부당이득

- **의료급여법 제23조**는 민법 741조의 민법상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조로서의 국가사업의 성격상 공법상의 청구권으로서 보장기관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득에 대한 자력집행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임**
- 의료급여법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성질은 내용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띠고 있으나, 그 청구권 행사는 민사상의 청구권 행사 와는 달리 “**공법상의 청구권(징수금)**”으로 행사하도록 규정
- 따라서, 의료급여법 제23조에서는 민법상의 부당이득제도와 달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및 허위의 보고나 증명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의료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 상당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 관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규정을 우선 적용



### (3)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23(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의료급여법 상 부당이득의 징수(제23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⑨ 제8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 [전문개정 2013.6.12.]

## 나. 부당이득 징수 요건

###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을 받을 것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 기망(欺罔), 위계(僞計), 허위(虛偽), 강박(強拍)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반하여 적법·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급여과정상 행하여진 모든 경우를 포함

※ 용어의 사전적 의미

- \* 기망(欺罔) : 남을 그럴 듯하게 속임
- \* 위계(僞計) : 거짓으로 계략을 꾸밈
- \* 허위(虛偽)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일
- \* 강박(強拍) : 불합리하다고 자각하면서 어떤 관념이나 행위에 사로잡혀 억제할 수 없는 일

- 의료급여를 받은 방법, 즉 행위가 반드시 위법 또는 불법행위일 필요는 없으며 보장기관에게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취한 경우와 의료급여 그 자체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 졌더라도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의료급여를 받는 자의 의도된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일방적인 행위 또는 제3자와 같이 행한 행위도 포함

### (2)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의미

- “의료급여를 받은 자”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급권자였으나 현재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 건강보험 가입자 등으로서 사실상 의료급여를 받은 자를 포함
-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란 허위·부당청구 등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법상의 급여제한 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단계별 수급절차 위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해당비용을 본인에게 받고 다시 의료급여로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장기관으로부터 당해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도 포함
-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상의 부당이득이 적용

### (3)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과 급여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관념 상 그 손해와 이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다고 인정되면 성립

### (4)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 징수

-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으로 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한다’는 것은 보장기관이 재량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하여 의료급여재정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음에도 이를 보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보장기관의 업무태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기속행위로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등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부징수하되, 그 비용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징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의 사업등록자 내지 개설자에게 아무런 책임 요소가 없이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반환케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컨대, 법 제23조 제1항은 의료급여비용을 과다하게 받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인지 여부는 법원이 사실 인정 과정을 거쳐 판단되며, 만약 요양기관과 아무런 관련 없이 피용자 개인의 잘못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그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라면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수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헌법 재판소 2011.6.30. 2010헌바375 결정).

## 다.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 (1) 대상

-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급여 등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적용 대상
- 동 규정에 의한 징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징수대상

## (상속제도 개요)

-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 순위, 직계비속 및 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
-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동 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상속을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존속의 5할을 추가 상속
  - ☞ 상속 지분 분할 예시 : 흥길동이 부당이득금 200,000원을 체납 중 사망하였고, 상속자가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자녀의 지분을 X로 배우자의 지분을 1.5X라 하면,
 
$$3X + 1.5X = 200,000\text{원}$$

$$4.5X = 200,000\text{원}$$

$$X = 44,440\text{원}, 1.5X = 66,660\text{원}$$
  - ⇒ 따라서 자녀는 각각 44,440원으로, 배우자는 66,660원으로 결정
- 부당이득 납부의무자
  - 상속인 지분별 고지(연대고지 불가)

## (2) 범위

- 의료급여를 청구, 수령하는 절차 및 과정상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의료급여 또는 의료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 (3) 방법과 절차

- 의료급여 등을 받은 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납부 고지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이 정한 납부기일까지 미납 시에는 독촉,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 (4) 시효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제3항에서는 소멸시효 및 시효증단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다른 부당이득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그 징수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짐.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4.24. 선고 2000다57856),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17-0479, 2017.09.22. 회신).
-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최초로 발부한 독촉장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5) 불복방법

- 부당이득징수금 납부고지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불복청구 되더라도 징수금 납부처분 및 이에 따른 체납처분은 중지되지 아니함

## 【상해요인 조사 시 참고사항(요약)】

범죄 행위	고의	중대한 과실	기인성
〈정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고의행위는 물론 과실에 기인하여 법을 위반한 행위	〈정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 진 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사고) 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음을 예전(인식)하고 감 히 그 결과 발생을 인용 하는 심리상태	〈정의〉 행위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 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정의〉 범죄행위와 보험사고 발 생간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때 또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 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 * 입증책임: 보장기관
〈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고발생에 대한 실현의 사 또는 실현을 위한 인 식상태는 있어야 함	극히 근소한 주의를 기울 였다면 결과발생을 예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전 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범죄와 보험사고 간에 기인성이 인정되면 상대방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료급여가 전부 제한
〈판단〉 법률이 정한 범죄성립요 건에 해당되면 범죄행위 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상 행위자의 차별· 기소여부를 묻지 않고,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행위에 해당			

서류확인 (사고내용 등)	사고(부상)발생 확인조사	부당이득금 결정	구상금 결정	정당급여인정 (상해요인 비적용)
진료기록부에 동일상 병 또는 부상으로 他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초진 他 의료급여기관 진료기록부 확인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기인, 고의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확인	수급자를 납부의무자로 부당이득금 결정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기인,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았음이 확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 그 급여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대위하여 가해자(제3자)를 납부의무자로 구상금 결정	상해요인 확인대상 급여비용이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된 사고가 아니었거나 고의의 사고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경우
약국에서 30만원이상 건으로 청구된 경우 약국에 처방전 사본을 요구,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급여기관 진료기록부 확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여부 확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당한 후 손해배상을 받고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납부의무자인 가해자가 사망 시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인에게 구상금 결정	급여비용을 발생하게 된 제3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상속인에게 부당이득금 결정(위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의함)	납부의무자인 가해자가 미성년자(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 민법 제755조 및 제913조의 규정에 의거 가해자의 친권자(보호·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연대)를 구상금 납부의무자로 결정	동승가족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 이외의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의료급여비.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을 때 운전자의 의료급여비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 사건접수가 되지 아니한 자폐 사고건과 사건접수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자폐사고로 확인된 경우

## IV. 상해요인 업무 프로세스



## IV

## 상해요인 업무 프로세스

1

## 상해요인조사 개요

## 가. 근거

## 1) (급여의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1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2호).

## 2) (부당이득의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 3) (구상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의료급여법 제19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의료급여법 제19조제2항).

**4) (자료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의료급여법 제32조의2제1항).

#### ※ [제공요청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하'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자료 등 화재·재난·재해 관련 자료('너'목)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는 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 관련 자료('터'목)
- 의료급여법 제32조의2제1항, 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등이 시장·군수·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의료급여법 제32조의2 제3항).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6)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의료급여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의 진술내용,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지체없이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제27조제1항).

7)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등)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나. 용어의 정의

- ‘상해요인’이라 함은 의료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의료급여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 ‘부당결정’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환수결정으로 부당 이득금, 구상금 등의 결정을 말한다.
- ‘제3자’라 함은 당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8.20선고, 2003다1878판결 참조).
- 따라서 보험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직·간접의 행위자로서 민·형사 책임의 가해자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

### (제3자의 행위로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민법 제755조), 사용자(민법 제756조), 도급인(민법 제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민법 제758조), 동물의 점유자(민법 제759조)
-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자(제2조, 제5조)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업자(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운행자(제3조),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제1항, 상법 제724조제2항)
-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여객운송사업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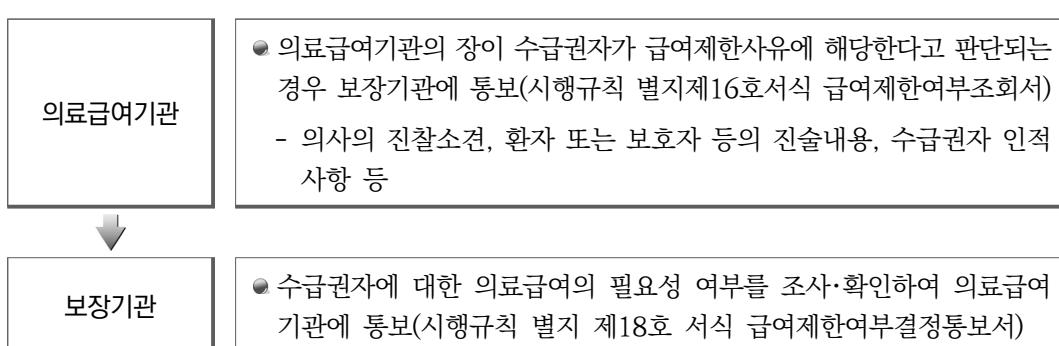
- ‘제3자의 행위’라 함은 제3자의 고의, 과실 등에 기인하여 법적 평가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로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등 위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행위도 포함한다.
- ‘가해자’라 함은 구상 요건을 발생하게 한 자를 말한다.
- ‘변제책임자’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게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상해요인 관리대상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사고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가능함에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산재, 자배법 등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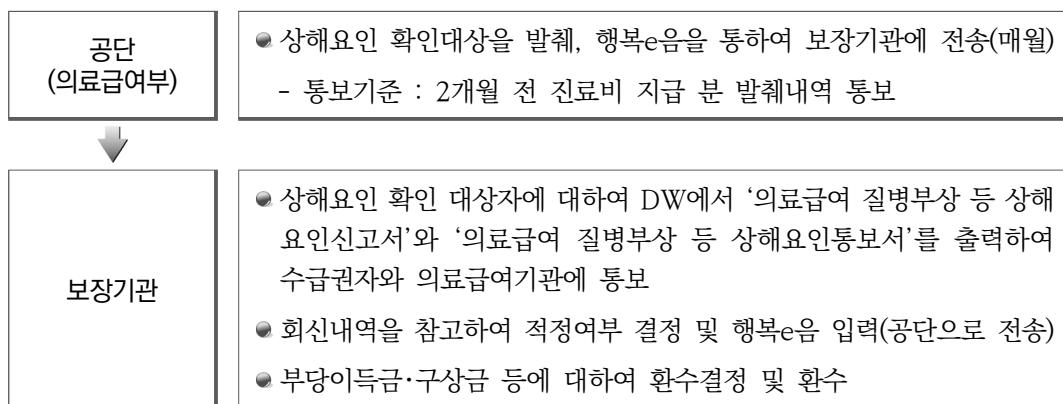
#### 라. 상해요인 처리절차

##### (1) 사전관리(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의료급여 통보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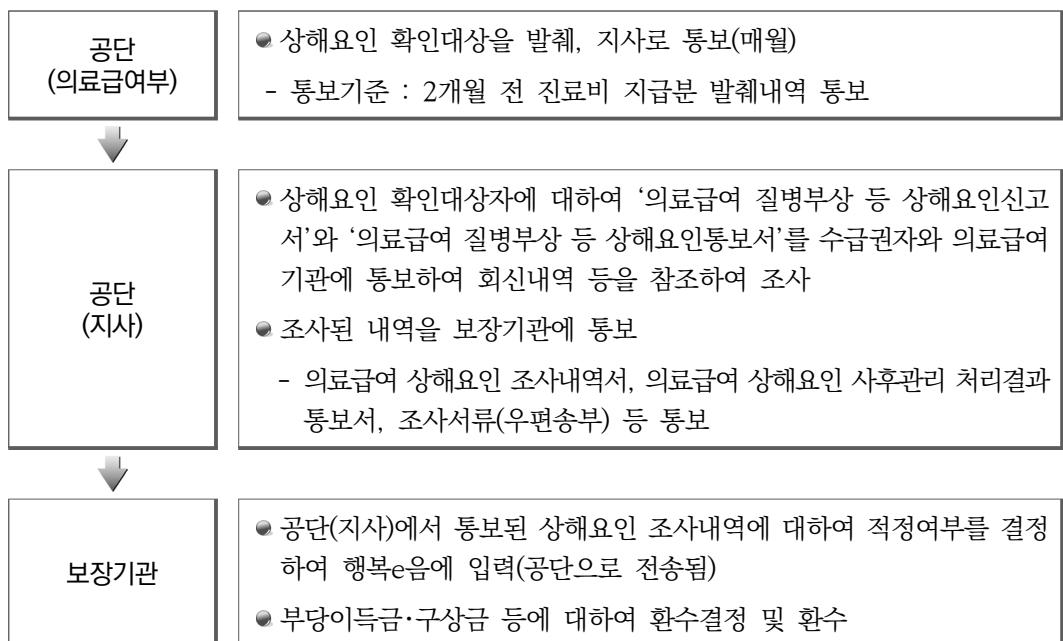


## (2) 건강보험공단의 상해요인대상 발췌의 경우

- 기관부담금 100만원 미만 상해요인 건



- 기관부담금 100만원 이상 상해요인 건



## 마. 세부 업무처리절차 및 요령

### (1) 상해요인 자료제공(공단 → 공단지사, 보장기관)

- 상해요인 확인대상 색출 기준
  - 상병코드가 S00~T98이고 기금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건
  - 상병코드가 V01~Y98이고 기금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인 건
- 자료제공 주기 : 매월
- 제공자료 유형 및 서식
  - 의료급여 상해요인 확인대상자 명단, 상해요인 통보서 제출 협조 요청,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 상해요인 통보서, 질병 부상 등 상해요인 신고서

#### (전산관리번호 부여 형식)



- ① : 발췌구분 “2” 표기 → 사후관리자료 중 상해요인 의미
- ② : 발췌유형 “01” (상병부호 10만원 이상), “02”(50만원 이상)
- ③ : 발췌년월일 : 2007년 3월 경우 → 0703 표기      ④ : 일련번호

### (2) 상해요인 조사

- 조사주체
    - 기금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기금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건 : 보장기관
  - 조사방법 및 절차
    - 보장기관은 공단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전송받은 상해요인 확인대상자를 확인하고, 사고내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DW에서 서식(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신고서, 통보서) 조회 및 출력
    - DW에서 출력한 「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신고서」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통보서」는 의료급여기관에 송부
- \* 제출기한은 발송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두고 기재

-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가 통보한 통보서 및 신고서(100만원 미만건), 공단(지사)에서 통보한 조사내역서 및 처리결과통보서(100만원 이상 건) 등 관련 자료를 검토 후 급여비용 적정여부 검토

#### [상해요인 조사시 유의사항]

##### ● 상해요인 조사 시 유의사항

- 상해요인 신고서 및 통보서상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등 일치여부 확인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진료기록부에 동일상병 또는 부상으로 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초진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역이 없더라도 같은 날 타 의료급여기관 진료건이 있을 경우 상병코드를 확인하여 유사점이 있을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대상 건이 약국에서 30만원 이상 건으로 청구된 경우, 약국에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급여기관 진료기록부 확인
- 사고(부상) 발생 경위 확인 조사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법 15조(의료급여의 제한) 또는 제19조(구상권) 제1에 따른 제3자의 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
- 상해요인 발생 원인이 교통사고로 확인된 경우 조사요령
  - 사고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확인한 후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 사고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고당일 초진기록을 확보하여 해당 사고관련 내용을 확인(해당 사고에 대한 진술을 누가 했는지 관계와 동승여부등을 확인)
    - 사고주변 및 당시 상황 등을 면밀하게 조사·확인
    - 사고발생 원인이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결정
- 동일·연속 진료건 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청구 시 월단위의 분리청구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건과 이하건 동시에 발췌되는 경우, 공단의 결정내용을 참고하여 결정 처리
- 100만 원 이상 조사 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내용(정당 또는 환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재조사하여 결정

### (3) 상해요인 결정시 유의 사항

#### 1) 정당급여 유형

- 자기 신체 피해 사고자
  - 관할경찰서에 사건·사고 접수 여부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위반 12대 사고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자피 교통사고 건으로 한정
- 급여비용을 발생하게 한 제3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이 확인된 경우
  - 운동경기 중 부상 등
- 납부의무자 사망에 의한 상속
  - ① 상속포기
    - 피상속인이 재산(상속재산)이 없고 첫 번째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시 두 번째 이하 순위자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정당결정
    -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이 없고 첫 번째 순위 상속인이 단순상속 시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결정
    -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부당결정. 다만,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시는 정당결정
  - ※ 구비서류
    -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상속포기 신고 수리 서류
    - 재산·소득 등의 확인서류 등
- ② 한정상속
  - 한정상속 결정서상에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산상으로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당결정
  - 상속재산 배당변제액이 결정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변제액으로 처분변경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정당결정
  - 상속재산 배당변제액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급여

※ 구비서류

-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한정상속 결정 서류
- 재산·소득 등의 확인서류 등

○ 동승가족 교통사고

- 동승가족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이외의 가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 의료급여를 인정(증과실사고도 의료급여 인정). 다만, 동승가족에게 운행자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등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자(손해보험회사)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 부당 결정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 상해요인 확인 조사결과 부당급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부당 결정할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의료급여로 처리. 다만, 부당 결정 총 합계 기관부담금이 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췌 결정

○ 산재 요양급여 최초 청구 건이 불승인 된 경우

- 상해요인 사후관리 대상(산재연계건 제외) 건으로 근로자가 재해발생일 이후 진료 건 중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청구한 건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된 경우 정당의료급여 처리

○ 가해자 불명 건 중 관할경찰서에 신고 되지 않은 건

- ① 가해자 불명 건 중 관할경찰서에 신고 되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문서로 확인하고 경찰서의 회신문서에 의하여 신고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결과에 따라 정당급여 처리
- ② 경찰서에서 문서로 회신하지 않고, 구두 또는 서류 열람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장복명, 유선통화기록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급여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자연발생 사고 정당처리

- 상해요인 대상 건 처리(유형별 발췌기준) 자료 확인 결과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등으로 결정 할 수 없는 자연발생 사고인 경우 정당 의료급여 처리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인 사업장을 납부의무자로 선정할 결정당시 법인 사업장이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쳐 폐업하여 납부의무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정당 결정



## 2) 자살시도자 의료급여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
  -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대인관계, 주위 사람의 진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확인하여 자살 시도 여부 판단
-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판단되는 자해는 의료급여를 적용

### [자살/자해 판단 예시]

- (자살시도)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 예) 음독, 투신, 목매임 등
  - (자해)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 없이 고의적으로 자기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 예)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거나 벽을 치는 행위, 흉기로 몸에 상처내기 등
- ※ 자살시도와 자해의 구분, 내재적 정신질환 유무 등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장기관 의료급여심의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결정

-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고의·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자살시도나 자해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의료급여를 제한

### [자살시도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 보험금 수령 등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해 행위
  -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자해 행위
  - 교통사고 등 사고 후 의료급여 적용을 목적으로 자살시도라고 주장하는 경우
  - 정치나 집단행동 등 특수한 목적 실현을 위한 자해 행위
  - 기타 고의·범죄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
- ※ 교통사고 등 사고와 관련된 자살시도 및 자해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자살시도로 확인된 경우에만 의료급여 적용

**[업무처리기간 이내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한 처리요령]**

- 대상 : 요양기관 청구지연 등으로 업무처리기간 이내(결정 전) 소멸시효 완성 건
- 처리방법 : 상해요인 결정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은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정당급여 처리

### 3) 부당이득 결정시 유의사항

○ 조사 우선순위

- ① 상해요인 확인대상 자료 중 제3자의 가해 건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발생일, 요양급여개시일이 빠른 건부터 우선적으로 처리
- ②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 내 진료비는 전액 고지. 단, 책임보험 한도 초과하고(대인배상 II)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적용(책임보험 한도 내 금원은 과실상계하지 않음)

**[퇴원지시 불이행 접수 건 처리요령]**

-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상병 및 질병이 그 상태가 양호하여 담당의사의 소견상 퇴원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급여제한여부조회가 접수된 경우, 아래 내용 등을 확인하여 결정·통보하여야 함
  - ① 의료급여기관이 지시한 퇴원 또는 회송일과 수진자에게 통보한 통보일자 및 그 지시내용, 진료경위, 담당의사의 소견서
  - ② 진료기록부 상 진료경위 등을 통하여 의사의 소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예)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통원진료가 가능하므로 퇴원 결정”
  - ③ 환자 측의 면담을 통하여 단순한 통원불편 등 환자의 개인적 이유로 퇴원지시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 ○ 가·피해자간 합의

-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해가입자가 가해자 또는 변제책임자와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내용에 관한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합의시기(합의 시기는 합의금을 수령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와 합의내용에 따라 결정종별(합의 이전 구상, 합의 이후 부당이득) 및 납부의무자를 선정하며 기관부담금은 구분산정(기간, 상병)을 통하여 결정
- 합의 이후 부당이득 결정은 사고관련 상병 및 후유증 전액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을 통해 향후 치료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 과실상계된 향후치료비를 한도로 결정

### ○ 현역병 등 결정 시 유의사항

- 사후관리 조사대상인 건이 현역병 복무기간 중 치료로 확인될 경우 정당 처리. 단 제3자 가해 및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인한 후유진료 등은 그 사유에 따라 부당 결정
- 사회복무요원의 훈련기간 중 진료는 정당처리. 다만, 훈련기간 종료 후 근무 중 부상은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부당 결정
- 상근예비역의 훈련기간중 진료는 정당급여. 훈련기간 종료 후 근무중 부상은 별도 보상법령이 없어 정당처리
- 현역병 전역이후 진료건 정당급여. 다만, 제3자 가해 및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인한 후유진료 등은 그 사유에 따라 부당 결정

### ○ 고지 이전 납부의무자 사망 건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환수대상 건 중 고지 이전에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건은 상속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고지(원고지 사유에 따라 재결정)

※ (구상권) 구상결정 이전 및 이후 납부의무자 사망 건은 원고지 사유에 따라 결정

### (부당이득금(법 제23조) 상속고지 방법)

-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후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결정금액(연체금포함)을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상속고지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해 부당이득금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채무 자체가 상속됨
  - 적용법규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전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결정금액(가산금 제외)을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 상속고지
  - 의료급여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였으나, 사망 시점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처분을 하였으나 문서 도달 전 사망한 경우 포함) 사망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불가하고, 처분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이 공법상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였다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부당이득금으로 상속고지
  - 적용법규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4) 구상금 결정시 유의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한 정부보장 책임보험금은 구상대상 아님
  - ① 뺑소니 사고는 결정유예자 관리(가해자불명 건)에 따라 처리
  - ② 무보험 사고는 차량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구상
- 쌍방 폭행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 가능)으로 인한 상해는 가해자에게 구상 처리

#### 5) 결정 유예 및 관리 유의사항

- 대상
  - 가해자 불명 등으로 관할경찰서에 사건 신고된 건
  - 기소중지 건
  - 산재근로자가 산재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중인 건

### ○ 관리

- 관리기간은 사고발생일 기준 3년간
- 결정유예 결정일 기준 1년까지는 6개월, 1년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찰관서의 가해자 검거여부, 출입국 기록 등 처리결과를 확인하되 마지막 조사는 사고발생일 기준 관리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확인
- 관리대상주기 건 및 관리기간 만료 2개월 이내 건 등 가해자 검거여부 확인 의뢰 건은 해당 월1회 의뢰 및 조사
- 기소유예 통보건 중 피의자를 알고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하는 경우 → 부당결정

#### (결정 유예 결정 시 유의사항)

- 가해자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가·피해자 간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대상으로 완전적용 및 구상권을 행사
- 가해자가 최종 확정되지 아니하고 형사사건의 상고심 등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전심(항고심 또는 1심) 또는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완전적용 및 구상권 행사
- 차후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무혐의, 가해자 변경 등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반영

### ○ 정당처리

- 관리기간(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가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수사(내사)종결 및 내사중지, 미제종결(미제편철) 통보 건, 기소중지 통보 건은 피의자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하는 등의 경우(사실상의 수사종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후 정당처리

\* 단, 사법기관의 재조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확인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시효기간 내이면 재조사 처리

## 6) 조사유예 관리 유의사항

- 대상 : 요양기관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수급자의 부재 등으로 사고(상병)발생 원인 등을 알 수 없어 조사업무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건

○ 확인서류

- 직권발소자(수진자 불명) : 주민등록관련 서류
- 무단전출 또는 다른 사유로 실거주지 확인이 불가한 자 : 통·반장 또는 집주인의 불거주 확인서(확보가 어려울 시 출장복명서)
- 해외출국자 : 출입국 사실 확인원,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확인서
- 요양기관의 휴·폐업 시 : 휴·폐업 확인서 및 관할 보건소의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 관리방법

- 조사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1년간 관리
- 6개월 마다 수진자의 주소확인
- 폐업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재개설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기타 관련기관의 자료존재 등을 확인

○ 정당처리 : 결정일로부터 1년경과 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불가 시 정당처리

(4) 결정의 변경

- 완전적용(일부적용) 또는 비적용 결정 후 사정변경에 따라 결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정 변경사유를 적시하여 내부결제를 얻은 후 행복e음 수정 입력 및 공단으로 결정 변경 공문 발송
- 수급자 또는 구상의무가 있는 제3자에게도 결정변경 사유를 적시한 공문을 발송하고, 비적용 후 완전적용으로 결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징수절차에 준하여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 이행



## (의료급여기관 상해요인 통보서 또는 진료기록부 미확보 시 처리)

- 대상 : 의료급여기관의 비협조(2회 이상 문서협조요청, 1회 이상 방문 독려 후) 등으로 상해요인 통보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해 급여결정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 요양기관 폐업 및 장기휴업으로 인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휴·폐업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진료기록부 송부 요청

- 처리방법

- 진료기록부, 상해요인 통보서가 없어도 유형별 확인 자료(상해요인 신고서, 유선 확인사항 등)로 사고내용 확인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결정(부당 또는 정당) 처리
- 진료기록부(상해요인 통보서)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건, 유형별 확인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건, 확보된 자료에 의해서도 판단이 불가능한 건은 조사유예자로 처리

- 유형별 확인자료

- 제3자 가해행위 사고

- 가·피해자간 합의서(변제각서), 목격자 진술서, 경찰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사건 접수된 건), 검찰송치기록부, 약식재판명령 등

-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19구급(구조) 증명원, 가·피해자간 진술서 또는 합의서(변제각서), 관련자 진술서, 소송관련 서류(판결문 등), 사고당사자 진술서,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기상청 기상증명서, 운전면허증, 종합보험사 또는 책임보험사 자동차 보험사고 접수사실 확인원,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 원부, 경찰청 교통사고자 D/B 연계 자료, 기타 제 증명 서류 등

- 업무상 재해사고

- 사용주 사실확인서, 임금대장 또는 임금수령증, 업무상 재해 현장 사진,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서, 사용자 및 피용자 간 합의서, 기타 이해관계인의 진술서 등

- 고의 및 음독 사고

- 담당의사의 소견 및 진단서, 목격자 및 관련자 진술서, 사고현장 도면 및 사진, 개인급여 내역 등(추가)

- 기타 사고

- 위와 같은 사고내용이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 자료

#### (4) 조사결정 후 처리

- 급여비용 적정여부 결과를 행복e음에 입력(결정내역 공단으로 전송)

##### [행복e음 “상해요인 처리결과 내역” 입력요령]

① 결정일자	② 처리구분	③ 처리사유
④ 적용개시일자	⑤ 적용일수	⑥ 결정금액

① 결정일자 : 상해요인 대상 급여비용을 부당 또는 정당으로 결정한 날

② 처리구분

유형	내용
완전적용	급여비용 전액 부당으로 결정하는 경우
일부적용	급여비용 일부를 부당으로 결정하는 경우
비적용	급여비용 전액을 정당급여로 결정하는 경우

③ 처리사유 : 환수결정시 환수유형, 비적용 시 비환수 유형을 기재

- 처리사유 유형 : 부당이득 결정(21), 구상금 결정(22), 본인과실 부상(23), 운동경기 중 부상(24), 자가 동물 및 공작물 부상(25), 동일가계 구성원 과실 부상(26), 기타(99)
- 처리구분에 따른 처리사유 입력기준

유형	내용
완전적용	부당이득 결정, 구상금 결정, 기타만 선택 가능
일부적용	부당이득 결정, 구상금 결정, 기타만 선택 가능
비적용	본인과실부상, 운동경기 중 부상, 자가 동물 및 공작물 부상, 동일가계 구성원 과실 부상, 기타만 선택 가능

④ 적용개시일

- 처리구분이 “완전적용”인 경우 진료개시일 기재, “일부적용”인 경우 급여기간 중 부당급여로 결정된 최초 급여개시일 기재, “비적용”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⑤ 적용일수

- “완전적용”인 경우 전체 급여기간(입·내원일수) 기재, “일부적용”인 경우 급여기간 중 부당 급여기간(입·내원일수) 기재, “비적용”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⑥ 결정금액

- “완전적용” 또는 “일부적용”인 경우는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기재, “비적용”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 【참고 : 상해요인 행복e음 화면】

### ○ 처리구분 선택화면

□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용 관리 > 상해요인 진료비 관리

□ 업무처리순서

- ① 결정처리 : 조회 조건 입력 후 조회 ⇒ 대상자 선택 ⇒ 결정처리결과정보 입력  
⇒ 공단전송저장
- ② 직권저장 : 조회 조건 입력 후 조회 ⇒ 대상자 선택 ⇒ 직권수정 버튼 클릭  
⇒ 명세서 내 주민번호 등 정보 변경 ⇒ 공단전송저장
- ③ 변경이력 조회 : 조회 조건 입력 후 조회 ⇒ 대상자 선택 ⇒ 변경이력조회 버튼  
클릭 ⇒ 변경이력 팝업 조회

순번	처리결과	의료기관 코드	의료기관명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 일련번호	성명	주민번호	시군구명	관리행정동	의료가구
2	처리	31100511	경기도 성남시	202180105851	001	홍길동	811010-2222222	성남시	1동	홀아빠
4	처리	31100571		202180105861	002	홍길동	800101-11111112	성남시	2동	홀아빠
5	처리	31100813		202180105844	001	홍길동	800101-11111111	성남시	3동	홀아빠
6	처리	31101046		202180104785	001	홍길동	800101-11111111	성남시	4동	홀아빠
7	처리	31204996		202180104771	001	홍길동	800101-11111111	성남시	5동	홀아빠

**④ 상세내역**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580101-11111112	의료급여유형	2종	진료개시일자	2018-01-01
진료일수	35일	상병기호	S0650	내원일수	5일	의료급여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보건소
실사찰로일자		실사찰리구분		실사찰리사유		기관부담금	663,240 원
실사적용개시일		실사적용일수		실사결과통보일		실사금액	
실사용단의견				실사첨부서류			
실사내용				현시군구	성남시		

**⑤ 처리결과내역**

결정일자	2018-05-11	처리구분	일부적용	처리사유	21-부당이득결정
적용개시일자	2018-01-01	적용일수	5일	결정금액	50,000 원
비고	주민번호 변경했습니다.				

\* 처리정보는 공단전송저장을 클릭해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되며 청구결정된 내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예시] ① 홍길동 111111-1111111 주민번호로 의료급여 자격 취득  
 ② 홍길동 222222-2222222 주민번호로 변경 됨.  
 ③ 건보공단 사후관리 발췌 시 과거 주민번호로 발췌(111111-1111111)되어  
 ④ 행복e음은 222222-2222222로 기 변경된 상태이며, 공단에서 수신된 과거 주민번호  
 (111111-1111111)를 변경 후 주민번호(222222-2222222)로 수정하는 기능

검색 조건	
<b>조회</b>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조건에 맞는 검색결과를 조회합니다.
검색 결과	
<b>메뉴얼 및 FAQ</b>	의료급여 사후관리 메뉴얼 및 FAQ를 조회합니다.
<b>사전고지출력</b>	사전고지내역(환수예정내역)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b>엑셀</b>	검색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합니다.
처리결과내역	
<b>직권수정</b>	주민번호와 결정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상태로 전환합니다.
<b>직권저장</b>	주민번호와 결정정보를 수정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미전송)
<b>변경이력조회</b>	결정정보 변경이력내역을 팝업 화면으로 조회합니다.
<b>공단전송저장</b>	처리결과내역의 결정정보를 등록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전송됩니다.

## □ 처리방법

### 1) 상해요인 부당이득 의심내역 조회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가 상해요인 전으로 청구된 내역조회를 위해 관련 조건 (접수년월, 처리결과, 성명, 주민번호, 전산관리번호, 의료기관, 기관부담금)을 입력 후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상해요인 진료비 목록을 조회합니다(필수 입력사항 : ‘접수년월 시작월’, ‘접수년월 종료월’ / 초기 값 : M-2월 ~ M월).
- [주의1] 의심내역 조회 시 : 조회하고자 하는 당월 기준 2개월 전 데이터까지 조회 가능(건강보험공단에서 2개월 전 발췌한 내역을 당월에 조회 가능)
- [주의2] 수급자의 주민번호 확인사항
  - 성명과 주민번호가 초록색 바탕으로 표기된 경우

성명	주민번호	» 조회 시점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직권저장 기능을 활용하여 수정 필요.
홍길동	661124-0	



##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 주민번호의 숫자 색상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경우

» 조회 시점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직권저장 기능을 활용  
하여 수정 필요.

### 2) 상해요인 부당이득 상세정보 보기

- 검색결과에서 대상자 선택 후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의 ② 그리드 목록을 클릭하면 각 의료급여 상세정보가 그리드 목록 아래 상세내역에 조회됩니다.

### 3) 매뉴얼 및 FAQ 조회

- 의료급여비용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③ “매뉴얼 및 FAQ”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게시판에서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4) 부당이득 의심내역 사전고지 우편발송 및 심사

- 상세 의심내역을 확인하고 ④ “사전고지 출력” 버튼을 클릭 시 “통보내역 발행대상 의료기관 목록” 팝업 화면에서 우편발송을 위한 「봉투」, 「내역(환수예정 상세내역)」, 「이의신청서(빈양식)」를 의료기관별로 각각 출력합니다.
- 출력한 내역을 우편봉투 수기작업을 하여 우체국에 방문 후 등기우편 발송을 합니다 (Off-line 업무).

※ 사전고지 우편물 발송 시 봉투(안내문) + 환수예정 상세내역 + 이의 신청서를 통봉하여 발송함.

### [1단계] 발행할 고지서 및 의료기관 선택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interface for selecting reporting institutions. At the top, there are three radio buttons for selection: '발행 구분' (Reporting Type), with '봉투' (Envelope) selected, and two other options '내역' (Record) and '이의신청서(빈양식)' (Complaint Application Form). Below this is a section titled '검색 결과 [총 3건]' (Search Results [Total 3 items]). It displays a table with three rows of data:

의료기관코드	의료기관명
3 3	
3 7	
4 2	

At the bottom of the screen are two buttons: '통보서 발행' (Issue Notice) and '닫기' (Close).

#### ① 발행구분을 선택

- 봉투 : 의료기관의 우편발송을 위한 봉투
- 내역 : 의료기관의 환수예정내역서
- 이의신청서(빈양식) : 이의신청서(빈양식)

#### ② 목록에서 발행할 의료기관 선택

#### ③ “통보서 발행” 버튼 클릭

## [2단계] 고지서 내역 미리보기 및 출력

The first screenshot shows a preview of a medical certificate titled "의료급여비급여 현수 예경 안내". It includes patient information: 수신: 문당서 출대학교병원 and 부당이득 내역명: 상해요인 진료비 관리. A note at the bottom says "1. 귀하가(귀원에서) 찾고하신 의료급여비급여 홍부당이득은 지금부터 내용은 내용은 내용을 나타나 해당 금액이를 환수하고자 합니다." and "2. 본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종봉본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접수하여 VRS 1.0.2.260-Release Ready 1/1 AA 210 x 297 mm".

The second screenshot shows a list of claims in a table format. The columns include: 번호 (번호), 치료내용 (치료내용), 수령처 (수령처), 증상 (증상), 배상금 (배상금), 진료비 (진료비), 내원횟수 (내원횟수), and 주민등록 (주민등록). There are two entries:

번호	치료내용	수령처	증상	배상금	진료비	내원횟수	주민등록
1	202101050401-001	종별로	000101-1	000000-1	2011.11.15	3	10 500000
2	202101050501-001	종별로	000101-1	000000-1	2011.11.05	3	17 500000

The third screenshot shows the "이의신청서" (Appeal Application Form) with sections for "의료급여 기관기호" and "의료급여 기관명".

### 5) 부당이득 결정처리

- 의료기관에 사전고지 우편발송 후 이의제기내역이 접수되면 관계기관(건보, 심평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후 해당 건은 “정당” 건으로 결정합니다.
- 의료기관에 사전고지 우편발송 후 기일이 지나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은 “부당” 건으로 결정합니다.
- 업무화면의 처리결과내역에 결정처리정보를 입력합니다.
  - “처리구분” 항목 선택 시 정당은 “비적용”, 부당은 “완전적용” 또는 “일부적용”을 선택합니다.
  - [주의] 결정처리가 불가한 경우 ⑤“직권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직권수정모드로 변경한 후 “처리구분” 항목을 “처리불가”로 선택 후 처리불가 사유를 비고란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봉투 선택 시 미리보기 화면]

- ①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
- ②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 ③ 프린터 출력  
※ 파일로 저장 시 좌측 상단의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

### [내역 선택 시 미리보기 화면]

- ①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
  - ②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 ③ 프린터 출력  
※ 파일로 저장 시 좌측 상단의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
- [이의신청서(변양식) 선택 시 미리보기 화면]
- ①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
  - ②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 ③ 프린터 출력  
※ 파일로 저장 시 좌측 상단의 디스크 아이콘을 클릭



##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 선택한 “처리구분”에 해당하는 “처리사유”를 선택합니다.
  - “적용일수” 및 “결정금액”을 입력합니다.
  - ⑧ “공단전송저장” 버튼을 클릭 시 결정정보가 저장되며, 등록된 해당내역의 결정 처리 결과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제공됩니다.
  - [주의] 결정정보 변경 시 청구결정여부가 “미청구” 전인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구결정”한 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청구결정한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산상계처리내역 및 현금환수 관리」 화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청구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하여야 함.
- ※ 처리결과내역 최우측 “청구결정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가능여부를 확인

⑤ 처리결과내역		직권수정	직권저장	변경이력조회	공단전송저장
결정일자	2018-08-03 [1]	처리구분	선택	처리사유	=선택=
적용개시일자	2018-01-15 [1]	적용일수	10 일	결정금액	100,000 원
비고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종료처리 함.				
	최초처리일 2018-08-03 [1]				

## 6) 직권저장 처리

-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을 지자체가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결정정보 변경가능기간 이후 보정처리 요청공문을 통하여 결정내역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 주민번호와 처리결과내역을 지자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직권수정 모드로 변경 시 수정 가능한 항목

⑥ 상세내역		직권수정	직권저장	변경이력조회	공단전송저장
성명	주민번호	의료급여유형	진료개시일자		
진료일수	일	내원일수	일	의료급여기관명	
실사완료일자	[1]	실사처리구분		기관부담금	원
실사작용개시일	[1]	실사작용일수	일	실사결과통보일	[1]
실사공단의견		실사첨부서류		실사금액	원
실사내용		현시군구			
⑤	직권수정	⑥	직권저장	변경이력조회	공단전송저장
결정일자	2018-08-22 [1]	처리구분	=선택=	처리사유	=선택=
적용개시일자	[1]	적용일수	일	결정금액	원
비고	주민번호 변경했습니다				

- 변경 수요가 있는 항목을 선택 후 ⑤ “직권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급자 주민번호와 처리결과내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모드를 변경합니다.
- [주의] 변경 가능한 항목 : 수급자 주민번호, 결정일자, 처리구분, 처리사유, 적용 개시일자, 적용일수, 결정금액, 비고

- [주의] 주민번호 변경 시 : 행복e음 시스템의 의료급여 관내 수급자 여부 및 주민 번호 변경의심 여부를 체크하므로 확인 후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 [주의] 직권 저장 시 : 본 기능은 행복e음 데이터만 변경 처리되는 것이며 건강 보험공단에는 해당 내역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 변경입력이 완료되면 ⑥ “직권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저장을 완료합니다 (직권저장 시 해당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 7) 결정정보 변경이력조회

- ⑦ “변경이력조회” 버튼 클릭 시 “변경이력” 팝업 화면을 통하여 해당 명세내역의 변경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변경이력 조회 팝업화면

번경회차	번경일	업무진행단계	처리부서	번경인	번경사유	비고
9	2010-08-12	결정처리	주민생활지원과	00003	직권저장	
8		결정처리	주민생활지원과	3	결정처리	
7		결정처리	주민생활지원과	3	직권저장	주민번호 수정처리
6		결정처리	주민생활지원과	3	결정처리	
5		결정처리	주민생활지원과	3	결정처리	
4		결정처리	주민생활지원과	3	결정처리	
3	2010-08-07	결정처리	주민생활지원과	00003	결정처리	

- 본 화면에서 조회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진행단계” 별 업무처리이력에 따른 조회

업무진행단계	설명
발췌내역수신	건강보험공단 발췌내역 수신 완료 시
결정처리	정/부당 결정정보 입력 완료 시
상계결과수신	건강보험공단 상계결과 수신 완료 시
현금 환수	현금환수 입력 완료 시

## 2 급여제한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

### 가. 부당이득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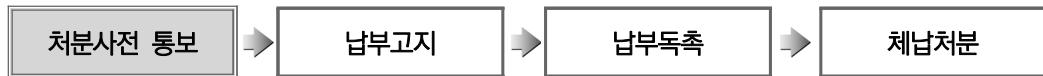
#### (1) 개요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의료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2) 징수절차

##### 1) 처분사전 통보<sup>2)</sup>

-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 2020.6.11.] 제2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보)에 의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기재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작성, 당사자에게 통보

## 2) 납부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여야 함

## 3) 납부독촉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10일 이상 15일 이내)을 정하여 독촉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6항).

## 4) 체납처분



- 납부 고지된 부당이득금이 미납되어 여러 번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거부 또는 납부를 기피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 등 강제징수 (법 제23조 제6항)



### (임금의 압류)

- 임금 등 계속적인 수입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4조(계속 수입의 압류)에 따라 각 지급기일마다 그 금액을 개별적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음
  - 매월 급료지급일 또는 상여금의 지급일에 제3채무자로부터 실수령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영수

「국세징수법」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 ● 압류절차

- ① 체납자에게 압류조서등본의 송달(「국세징수법」 제29조)

-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그 등본에는 채권의 추심, 양도기한의 유예, 채권면제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부기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②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전달(「국세징수법」 제41조)

- 보장기관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문서로써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공단에 지급할 내용을 부기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함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
- 또 체납자에 대하여도 채권 압류통지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동법 제42조)

#### ● 압류할 채권의 표시방법

체납(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임금(본봉, 제수당, 상여금 기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씩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금 중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씩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압류 등의 구비서류]**

- 압류 시 : 압류조서(집합건물), 압류 등기(등록) 촉탁서(집합건물, 부동산, 자동차), 압류통지서(집합건물)
- 압류해제 시 : 압류해제조서(자동차), 압류해제등기(등록) 촉탁서(자동차), 압류해제 통지서(자동차)

## **나. 구상권의 행사**

### **(1) 절차**

#### **1) 납부고지**

- 수급권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구상금 결정 및 청구를 공문서로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월○일까지 금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로 명시하여 고지
- 수급권자 전출입으로 보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진료비를 지급한 보장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채권 이관대상 아님)

#### **2)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보장기관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납부최고하여도 가해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실현

## **다. 납부의무자**

### **(1) 부당이득 납부의무자**

-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급여 등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적용 대상
- 동 규정에 의한 징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징수대상

## (2) 구상금 납부의무자

### 1) 일반원칙

- 구상금 결정의 납부의무자는 당사자 능력이 있고, 권리의무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자연인은 연령·성별·국적에 상관없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자연인이 사망하면 당사자 능력을 잃지만 파산으로는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법인의 경우, 사단·재단법인, 영리·비영리법인, 내국·외국법인에 관계없이 모두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으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하여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서 외부에 대해 명확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이나 공공조합 등 공공법인도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으나, 국가의 기관임에 그치는 행정청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고 법인의 지방조직이나 내부 부서에 불과한 지점, 분회 등도 당사자 능력이 없음

### 2) 개별사안에 따른 납부의무자

- 일반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급여비용 발생행위 :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사용자  
\* 피용자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용자도 납부의무자(일반불법행위 책임)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공작물 점유자
- 동물이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동물의 점유자, 보관자
- 수인의 공동불법행위 : 공동불법행위 가담자, 교사자, 방조자
- 자동차 사고에 의해 수급권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 자동차의 소유자  
\*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도 납부의무자(일반불법행위 책임)

## (3) 상속에 따른 납부의무자

- 납부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상속의 범위 내에서 납부의무자

## 【참고 : 납부의무자】

유형	사례	적용 법률	납부의무자
구상권행사	공통 :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자동차사고	민법 제750조	운전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차량소유자
	동승가족교통사고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책임보험사
	동승가족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43조 또는 44조	운전자
	일방적인 폭행	민법 제750조	가해자
	동물에 의한 사고	민법 제759조	점유자, 보관자
	책임무능력자의 가해 행위	민법 제755조 제1항	법정감독자
		민법 제755조 제2항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	근로자 본인
		민법 제756조	사용자
	공작물설치·보존하자	민법 제758조	점유자, 소유자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제1,2,3항	가해자(연대)
	유치원안전사고	민법 제756조 제2항	유치원장
		민법 제750조,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사 등 감독자
부당이득금	쌍방폭행(고의)사고	원칙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23조 예외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19조	원칙 :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징수 예외 :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구상합의 후 수급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23조	수급권자
	자폐 교통사고 (중대과실)	공통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 동법 제23조	오로지 주로 운전자 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급여제한 불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17조	
		도로교통법 제21~23조	

유형	사례	적용법률		납부의무자
		건널목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무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음주,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보도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2항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12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사업장 사고	산재 미신청	민법 제741조	사용자
		산재 승인건	민법 제741조	수급권자 (대체청구)
		산재 미승인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하나 산재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근로기준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민법 제741조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여부는 보장 기관에서 입증
상속	납부의무자 사망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참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속인 지분별 고지 (연대고지 불가)

## 라. 급여비용 환수범위

### (1) 부당이득의 환수범위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의료급여 제한 예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에 따라 의료급여 제한사유 통보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조사한 결과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 또는 일부의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
  - 급여제한 예외의 경우라도, 사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징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변제능력 여부를 살펴 결손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 부당급여 대상 건으로 당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 등 구분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 부당이득 환수 범위 결정

### (2) 구상금의 환수범위

- 제3자의 위법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 의료급여 또는 의료급여비용 전부 환수

## 마. 소멸시효

### (1) 부당이득 소멸시효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다른 부당이득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그 징수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짐.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의미,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2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4.24. 선고 2000다57856),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에 관하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17-0479, 2017.09.22. 회신).
-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적용
-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최초로 발부한 독촉장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2) 구상금 소멸시효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손해발생 사실 및 제3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
- 3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 모두를 안 때부터 진행하는데,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날

## (3) 소멸시효의 중단

### 1) 의의

- 소멸시효가 친해되는 도중에 납부의무자가 채무승인서 제출, 일부금 납부 등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며, 그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

### 2) 중단사유

- 구상금은 최고(독촉)만으로 시효중단이 되지 않으므로, 시효만료 6월내에 납부의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압류, 가압류, 거처분 신청을 하거나, 채무승인(변제각서, 일부금 변제 등)을 받아야 시효중단이 됨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독촉만으로 시효중단 효력 발생(대판 87다카 150)

## 바. 결손처분

### (1) 근거

-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 동법 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

### (2) 의의

-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불납 채권을 의료급여법 제24조(결손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결손처분)에 따라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3) 결손처분 주기

- 반기별로 실시(연 2회) : 금액구분 없이 신청

※ 결손처분 주기는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

### (4) 결손처분 대상

-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진료비가 지급된 다음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건
- 구상금 : 손해배상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건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건

\* 결손처리 가능 대상 유형 : 사업장 부도 및 파산, 행방불명, 사망, 장애인, 고령(미성년자), 특수시설 수용, 해외이민(이민말소) 등



## (결손처분 대상유형의 판단)

## ● 채무자 소재불명(행방불명 등)의 경우

- 납부의무자가 거주불명자(세대)로 등록된 후 3년 이상 경과된 건이거나, 납부의무자가 현 주소지 전입일로부터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건
-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불거주자에 대하여 집주인 또는 리·통장으로부터 받은 불거주 확인서와 행정기관에 거주불명자(세대)로 의뢰한 문서를 첨부하여 증빙서류로 첨부

## ● 해외이민의 경우, 공부상 현재 2년 이상 “이민출국말소”, “현지이주말소”이거나 단순 출국자 중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출입국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 ● 특수시설 수감(수용)자인 경우

- 결정고지 1년 미만일지라도 채무자의 잔여 형기가 3년 이상이거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채권으로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 민사소송 승소 후 3년 미만일지라도 채무자의 잔여 형기가 3년 이상으로 수감 중인 자 또는 파산자로서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을 때

## ● 사업장 부도 및 파산 등

-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해당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 (5) 결손처분 요건(의료급여법 제24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결손처분 대상별 증빙자료〕

대 상	증빙자료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청산관련자료</li> <li>○ 법인등기부 등본</li> </ul>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해당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정리절차 개시관련자료</li> <li>○ 법인등기부 등본</li> </ul>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증빙자료 : ①②③</li> <li>○ 주거 부정자 : 불거주 확인서 * 직권말소자는 말소 주민등록표 등본</li> </ul>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증빙자료 : ①②③</li> <li>○ 법적상속자(직계존·비속)등 채무승계자의 재산 조회결과</li> <li>○ 법적상속자의 상속재산 포기 시 법원 판결문 첨부</li> </ul>
채무자가 60세 이상인 자로서 재산이 없거나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증빙자료 : ①②③</li> </ul>
채무자가 3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증빙자료 : ①②③</li> <li>○ 재소(수용)증명원</li> </ul>
채무자 이민으로 인하여 국내에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증빙자료 : ②③</li> <li>○ 이민으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li> </ul>
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증빙자료 : ①②③</li> <li>○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작성 및 증빙자료</li> </ul>
<b>[공통 증빙자료 내역]</b>	
①주민등록표 등본    ②재산조회서 결과    ③세제조회서 결과 ④기타징수금 결정내역조회    ⑤납부의무자별 체납내역 조회 ⑥국민연금가입여부조회	

## 사. 구상권행사를 위한 민사소송

### (1) 의의

- 민사소송이라 함은 사인(私人)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 또는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 조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보호·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소의 제기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에 이르는 판결절차’ 외에도 강제집행절차, 증거 보존절차, 독촉절차, 집행보존절차 등 사권을 보호하는 재판상 절차의 전체를 말함

### (2) 민사소송의 필요성

#### 1)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

- 납부의무자가 납부능력(재산, 직장)이 없고, 채무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또는 장래 납부의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판의 청구로 시효를 중단하기 위함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2) 분쟁해결을 위한 제소

- 납부의무자가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때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비 타협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재판권의 판결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하여 제기

#### 3)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제소

-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함
- 민사소송은 가장 중요한 강제적 수단으로서, 그 대표적인 것이 승소한 확정판결이며, 그밖에 재판상의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확정, 공정증서 작성 등도 판결은 아니나 판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집행권원이 됨
- 청구할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취하는 것보다 소송(소액 사건 심판)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으며, 소액사건의 경우 독촉절차보다 소액사건 심판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납부의무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많음

## (3) 민사소송의 구분

구 分	근 거	관 할	비 고
○ 손해배상 청구소송 - 단독사건 : 소송불가 액 2,0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 합의사건 : 소송불가 액 5,000만원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사소송법 제1조~제40조</li> <li>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규칙</li> <li>소액사건심판법 및 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고의 소재지 지방법원(지원)</li> </ul>	소액사건은 2,000만원 까지
○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무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지원)</li> <li>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법원</li> </ul>	채권의 내용이 명확하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경우 다만, 지급명령의 효력은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은 없음
○ 가압류신청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압류할 물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li> </ul>	재산도피로 판결의 집행이 어렵다고 예상 되는 경우
○ 강제경매신청	민사집행법 제1조~제2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제집행 대상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li> </ul>	판결확정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신청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당시 기준 채무자 소재지</li> <li>지방법원 또는 제3 채무자 소재지 지방법원</li> </ul>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 및 추심(전부)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민사소송법 제98조~제1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제1심)로 소송을 수행한 법원</li> </ul>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결정이 있는 경우
○ 강제(가압류) 집행비용	민사집행법 제18조~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제경매신청 및 추심 (전부)명령 참조</li> </ul>	강제집행비용의 추심 또는 별도로 가압류집행 비용을 추심할 경우

\* 소송비용액 신청 시 구비서류 : 소송비용 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비용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영수증 등), 확정증명원 등(서식 참조)

## (4) 손해배상 청구소송(구상금)

## 1) 청구소송절차 및 구비서류

순서	소송절차	구비서류
①	• 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  • 소송수행 - 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상인 민사소송 - 지급명령신청	• 소장(당사자수+1부)  • 입증서류 각1부 - 결정서 사본 - 진료비수령확인서 사본 - 상병발생경위신고서 및 통보서 사본 - 변제확인서 사본 - 사고경위서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사본 - 독촉장 사본(등기우편) - 합의서 사본 - 최고장 사본 - 기타
②		
③	• 소장접수 진행 및 판결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부
④	• 소송결과보고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민사소송 결과보고

## 2) 업무처리절차

## ① 소제기 판단

- 납부의무자가 납부능력(재산, 직장)이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소를 제기
- 납부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으면서 변제확인서 제출 또는 분할납부에 불응하는 경우나 소재불명 자, 기타 부득이하게 시효를 연장하여 징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시효완성 예정일 3~6개월 전에 소를 제기
- 납부의무자가 현재는 납부능력이 없으나 장래 납부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권을 미리 확보하고자 할 때

## ② 소송준비

-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 상태와 주변여건 등 징수 가능성 까지를 포함하여 소송의 실익을 면밀히 판단하고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산조서, 진료비수령확인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초진병원진료기록부, 상병발생 원인신고서 등 소제기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

## (4) 지급명령신청

### 1)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순서	소송절차	구비서류
①	• 지급명령신청 판단 및 준비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당사자표시(당사자수+1부)
②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입증서류 각1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음)
③	• 지급명령신청 및 결정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 1부 • 지급명령신청서 1부 • 지급결정명령문 1부
④	• 지급명령결과정리 <피 신청인 이의신청 시>	
⑤	• 본안소송이행에 따른 소송수행 및 판결 - 인지대 및 송달료 추가 납부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필요시) 등	• 인지대 및 송달료 추가납부서 1부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부
⑥	• 소송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1부 • 소송사무심의위원회 결의서 사본 1부 • 소송 진행 내역 등 관련서류

### 2) 업무처리지침

- “지급명령” 의의
  - 지급명령이라 함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 일정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는 독촉



절차이며,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에 확정력 및 집행력이 부여됨으로써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간결·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간이 소송절차임

#### ○ 지급명령 신청

- 채권의 내용이 확실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송달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공시송달 불인정)
- 채무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봉급,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을 대상으로 함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
- 지급명령신청은 서면으로 당사자와 신청금액,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하여 결정
-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 그 결과를 송달

#### ○ 피 신청인 이의신청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정되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이의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므로 송달료 및 인지대의 추가납부,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취함

#### ○ 지급명령의 확정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 또는 각하결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됨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있고, 기판력은 없으나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적용

## 【소송 업무 진행 사항】

### ① 소제기 대상 발굴

- 납부독려 결과 납부거부 및 기피로 소송이외의 방법으로는 징수추진이 어려우면서 재산 및 소득 보유자  
(향후 납부능력을 갖을 수 있는 경우라면 시효 연장의 의도로 소제기)

### ② 소제기 최종 검토

- 소멸시효 잔여기간 6개월 경과 여부
- 소제기 대상 소송예고 안내문 발송(등기)
- 3회이상 최종 징수독려(단 소멸시효 임박건 1회이상)

### ③ 소장 작성 등 준비

- 소장작성
- 입증자료 및 첨부서류 준비
- 강제집행 가능 물건 권리분석(부동산, 자동차등 근저당 내역 확인)

### ④ 소송 제기를 위한 내부 결재

- 비용 및 송달료 등을 확인하여 예산 확보
- 필요시 집행가능 물건 가압류

### ⑤ 민사소송 제기

- 전자소송 접수

### ⑥ 민사소송 진행

- 소장접수 및 사건번호 확인
- 법원 보정 통보 : 7일 이내(기간 염수)
- 준비서면 제출 : 피고의 최초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변론기일 지정시 1주일 이전) 제출
- 항소 :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접수일 포함)  
※ 항소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소의 실익여부 확인 후 항소

⑦ 승소 판결

- 제 증명서 발급신청(집행문부여, 송달,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 확정판결 신청 :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약20일 경과 후 법원에 신청  
(확정에 따른 법원문서 수령까지 시간요함)

⑧ 1차이자, 비용 등 고지

- 1차이자 고지 및 승소 결과에 따른 납부독촉 : 소송확정증명원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비용신청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고지

⑨ 재산명시 등

- 승소 판결 후 3개월이내 납부 거부건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신청  
(강제집행 절차 진행 병행)

⑩ 2차이자 고지

- 소송원금 완납일로부터 7일이내 고지(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납까지 법정이자 고지)

⑪ 징수추진 종료

- 기존 가압류 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해제 등

### 3 권익구제

#### 가. 이의신청

##### (1) 개요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권리구제방법

## (2) 근거

- 의료급여법 제30조<sup>3)</sup>(이의신청 등)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sup>4)</sup>(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sup>5)</sup> 제35조(이의신청서 등)

## (3) 이의신청 기관 및 대상

### 1) 이의신청 기관

- 시·군·구청장 :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2) 이의신청 당사자

- 신청인 :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
- 피신청인 :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행한 처분청

- 
- 3)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에 이의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4) 이의신청 절차

##### 1) 신청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할 경우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국외의 경우 30일 이내
  -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 신청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 2)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결정기간 연장 시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할 것

##### (이의신청 처리요령)

###### ● 이의신청 내용 확인결과, 징수·결정에 흄이 있는 경우

###### 가) 납부고지서 재 발부

- 처분결정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납부주기에 납부기한을 새로이 부여하여 재고지

###### 나) 결정취소

-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채권소멸 사실을 통보하며, 소재불명 등으로 채권 소멸사실이 미 통보된 건은 직계 존·비속 또는 관계인에게 통보

###### ● 고지(독촉)서를 못 받았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 고지방법, 납부의무자의 주소지 전·출입여부, 우편배달 사고 가능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고지서 미 수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판단 후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

### 3) 이의신청 불복

-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제기 행정청 : 시장·군수·구청장 처분 - 시·도지사

## 나. 행정쟁송

### (1)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심판하는 쟁송절차(행정심판의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의함)

### (2)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행정소송의 절차는 「행정소송법」에 의함)

※ 전자소송 사이트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후 전자소송 진행 가능

※ 부동산 압류 사이트 :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접속 후 전자신청 클릭 후 하단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 화면에서 전자등기촉탁이용자 등록 후 전자등기촉탁 로그인 후 부동산 압류해제 전산등록이 가능



## V. 상해요인 관련 사례



# V

## 상해요인 관련 사례

1

### 부당결정에 따른 판례 및 주의사항

#### 의료급여법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다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규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2.】



## 12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된 판례

법 제15조에서는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고가 예측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의료급여를 아니하겠다는 취지임.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39548 판결)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해당(대법원 90.5.22. 선고 90누752판결)되는 것으로써 중과실과 경과실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함

대법원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고의의 범칙행위에 해당된다(1999.2.12. 선고 98다26910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따라서 무면허 운전에 기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는 이 법에서 급여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칙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15조에서 정한 급여제한 대상인 중대한 과실의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03.2.29. 선고 2002두12175판결)하여야 할 것이며, 무면허 운전이 고의적인 범칙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97다27039 판결 1998.3.27. 선고)무면허 운전이 의료급여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거나 그러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급여제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의료급여사고가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법 1986.4.23. 선고 85나4196 판결).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 역시 범칙행위에 포함되어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하나, 법원의 판례는 범죄와 중대한 과실의 요건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해당 사고와 위반사실의 직접인과가 없을 경우 외형적인 요소만을 근거로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급여제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진료기록부의 진술자가 누구인지, 음주측정 등을 통한 음주여부가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등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판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579 판결). 따라서 사고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

중앙선 침범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떤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1629 판결)에 해당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에 해당하고, 동법 제13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됨. 따라서 자동차 사고조사와 동일한 기준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함



## 고의 사고와 관련된 판례

의료급여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서의 ‘고의’란 정상적인 판단능력(책임변식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며, 대법원은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사고 당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예견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능력, 기술 등으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고 믿고서 실행한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보기는 어려운바(대전지방법원 2001.12.28. 선고 2001구2691 판결),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최초 사고 발생 이후 사고의 원인이 고의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고 직후에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면 그 진술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8. 선고 96도1540 판결)”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부상경위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됨

고의 사고를 결정할 경우 사고 당시 수급자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따라 결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상 사고 당시의 의식상태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기록된 상태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황증거를 근거로 결정해서는 않됨

만취상태 상의 자해나 부상의 경우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당시의 정황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 하여 부당이득 결정을 하지 않으나, 타인과의 다툼중 우발적 자해처럼 본인이 사고 당시의 결과를 예측가능한 부상의 경우 급여제한 대상이 됨

### 자살시도와 관련된 판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수급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수급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상해)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4.18. 선고 2009다97772).

자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당급여로 결정함. 자살 시도자의 정신과 병력이 없더라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진술과 상황등을 파악하여 결정  
다만 보험금을 노린 자살시도 등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는 부당이득 결정

### 실화·방화 사건관련 법령해석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①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또는 165조(공용 건조물 등)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일반건조물 등)에 기재한 물건을 태워 없애거나,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일반 물건)에 기재한 물건을 태워 없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

형법 제171조에서는 업무상실화죄 및 중실화죄에 관하여 규정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실화죄보다 그 책임이 가중됨

사법기관으로부터 '중실화죄'가 아닌 '실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기관의 인정 사실을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부당함



### 쌍방폭행 관련된 판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특히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상해하는 행위는 물론, 싸움과 같은 상호폭력 행위는 행위자 상호 간 폭력 등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는 것, 즉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대법원 1993.8.24. 선고 92도1329 판결).

쌍방폭행에 의한 의료급여 사고라 하더라도 폭력행위와 보험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고의의 범죄행위로 보아 급여제한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바, 폭행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정황 및 피해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하며,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려 찰과상 등을 입힌 정도의 사정은, 설령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08.7.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우연히 발생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가 인정되지만,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환수 여부는 피해의 경중이나 손해배상금 수령(합의 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그 기준이 됨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의료급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와 ‘보험사고’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성립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은 명백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되 그 입증 책임은 보장기관에 있음. 이는 보장기관의 수급권 제한이 수급권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의료급여 형평성의 또 다른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

쌍방폭행의 경우 양자간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까지 그 책임을 물어 급여제한을 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으로 결정

### 산재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23조의 “속임수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기망 및 위계, 허위, 강박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반하는 적법·타당하지 아니한 방법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의료급여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절차나 의료급여과정상 행하여진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방법(행위)이 반드시 ‘위법’ 또는 ‘불법 행위’일 필요는 없고, 보험급여 자체는 정당하고 적법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불이익을 준 경우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포함됨(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즉 ‘부당’은 고의나 위법하지 않더라도 과실유무나 착오 등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수급자의 업무 또는 공무수행 중 업무 또는 공무에 기인하여 질병·부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사용자 책임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급여의무를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의무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확립하여 이중급여를 배제하며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산재보상이 가능한 수급자가 본인이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하며, 최초 진료시 산재상병으로 확인되나 이후 산재상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최초진료기록과 근태내역 및 임금지급 내역등을 확인하여 부당결정

###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6.12.】

### 구상 관련 판례

법 제19조의 제1항의 입법취지는 제3자의 행위로 수급자가 상해 등을 입어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에 제3자가 손해배상을 하기 이전에는 보장기관이 의료급여의 사회복지적 성격에 비추어 먼저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후 수급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대위하고, 가해자인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는 그 지급받은 배상액 한도 내에서는 이중적인 손해전보를 배제하고 의료급여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보완관계에 따른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볼 것임(수원지방법원 2007. 10.16. 선고 2006단2729 판결).

법 제1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제3자의 행위로 의료급여 사유가 생겨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던 중 제3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에, 합의금으로 진료비를 총당하여야 함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이중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장기관의 의료급여 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여기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지불된 것을 의미하고,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라 함은 현실적으로 지불된 배상액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면제·포기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즉 “의료급여를 받을 자가 스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포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그 면제·포기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행할 의무를 면하는 것임(대법원 1978.2.24. 선고 76다2119 판결).

권리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제3자(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면제나 포기·화해 등은 진정한 것임을 요하고 있으며, 합의나 청구권의 면제나 포기·화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의금액이 수급권자의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지, 기타 합의나 면제·포기·화해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형사적 합의만 이루어지고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수령했다면 이는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기관의 의료급여의무가 절대적으로 면책된다는 것이고, 여기의 보상액에는 현실로 지불된 배상액뿐만 아니라 청구권을 포기·면제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임

사고로 인한 후유증 진료와 관련하여 사고로 입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후유증의 원인과 관련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내역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고 가능성만을 언급하거나,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이를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부당(구상)결정 할 수 없음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인 수급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 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그러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임의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구내치료비 추가특약의 경우 영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2

##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관련 급여제한

## 1-1. 무면허 음주운전 중 부상

## 사례

-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술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3잔 마신 것에 불과하고, 수해복구 및 상수도 공사로 파헤쳐진 후 복구가 안 된 어두운 농촌마을 도로에서 자갈 또는 모래에 넘어져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법 제15조에서는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고가 예측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의료급여를 아니하겠다는 취지임.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39548 판결)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해당(대법원 90.5.22. 선고 90누 752판결)되는 것으로써 중과실과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결정
- 대법원에서는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1999.2.12. 선고 98다26910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따라서 무면허 운전에 기인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는 이 법에서 급여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15조에서 정한 급여제한 대상인 중대한 과실의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03.2.29. 선고 2002두12175판결)하여야 할 것이며, 무면허 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97다27039 판결 1998. 3.27. 선고)무면허 운전이 의료급여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거나 그러하였

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만 급여제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의료급여사고가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법 1986.4.23. 선고 85나4196 판결).

- 만일 해당사건에 대한 급여제한을 위해서는 해당 사고 발생지역의 상태와 음주를 하였다는 진술외의 음주측정 결과등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무면허 운전이며, 진료기록상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외형적인 요소만을 신뢰하여 급여제한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한 급여제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 1-2. 수급권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중앙선 침범사고

### 사례

- 수급권자 A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방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동차에 부딪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급여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수급권자 A에 대하여 급여제한 또는 부당 이득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 판단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고, 동법 제13조 제3항에 “차마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부상하면 의료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위 법에 의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

### 1-3. 선행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한 중앙선 침범 사고

#### 사례

- 수급권자 A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자전거 도로에서 선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급여사고에 대하여 급여제한 또는 부당이득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 판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에 해당하고, 동법 제13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도로에서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월하려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마주오던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 질서유지 등의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579 판결). 따라서 사고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
- 중앙선 침범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떤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대법원 1994.9.27. 선고 94도1629 판결)에 해당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출근)으로 인해 정상 진행중인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부상하면 의료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은 위 법에 의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며 선행 급여가 이루어졌다면 동법23조에 따른 부당 이득 징수대상임

### 1-4. 만취 중 유리문을 발로 차 부상

#### 사례

- 수급권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식당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급여 여부

#### 판단

- 의료급여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서의 ‘고의’란 정상적인 판단능력(책임변식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며, 대법원은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3.9. 선고 200다67020 판결)
  - 수급자는 이 건 부상이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닌,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급여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식당 현관 유리문을 발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외래초진기록에도 만취상태에서 어떻게 부상을 당하였는지 모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부상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법 제15조제1항의 급여제한의 사유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급여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행위’와 ‘보험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은 명백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
  - 수급자가 식당 현관 유리문을 발로 가격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요양기관의 외래초진기록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 건 부상은 고의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제한 할 수 없음
- ※ 쌍방폭행의 경우 고의사고가 아닌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의 변식능력과는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구상 혹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할 사안임



## 1-5.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한 부상

### 사례 ▶

- 수급권자가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급여 여부

### 판단 ▶

-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2호 급여의 제한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제한하도록 되어있음. 부탄가스 흡입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의 위반으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같은법 시행령 제22조(환경물질)에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접착제 및 도료, 부탄가스를 명시하고 있음)의료급여를 제한, 다만, 14세 미만의 책임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해태가 없었음이 입증될 때에는 급여를 해야 함

## 1-6. 수급권자의 방화 또는 실화에 따른 부상

### 사례 ▶

- 수급권자의 방화 또는 실화에 따른 부상 시 의료급여 제한 여부

### 판단 ▶

-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①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또는 165조(공용건조물 등)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일반건조물 등)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거나,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일반물건)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
- 형법 제171조에서는 업무상실화죄 및 증실화죄에 대하여 규정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실화죄에 비해 그 책임이 가중됨
- 사법기관으로부터 '증실화죄'가 아닌 '실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기관의 인정사실을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부당함

### 1-7. 수급권자인 부부간 또는 부자간 싸움에 의한 경우 급여제한

#### 사례 ▶

- 수급권자인 부부간의 싸움이나 부자간 싸움 등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급여 여부

#### 판단 ▶

- 쌍방이 가해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제한 (향후 동 사고로 인한 진료가 확인될 경우 법23조의 부당이득으로 결정)
-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하되, 가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

## 1-8. 쌍방폭행사고와 급여제한

### 사례 ▶

- 수급권자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싸움이 일어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 의료급여 여부

### 판단 ▶

-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급여제한규정(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임. 여기서 ‘범죄행위’라 함은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고의적인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됨은 물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자신의 범죄 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 형법 제257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게는 상해죄로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특히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상해하는 행위는 물론, 싸움과 같은 상호폭력 행위는 행위자 상호간 폭력 등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는 것, 즉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대법원 1993.8.24. 선고 92도 1329 판결).
- 따라서 우연히 발생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가 인정되지만,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환수여부는 피해의 경증이나 손해배상금 수령(합의 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됨

### 1-9. 본능적 방어행위로 볼 수 있는 폭행사고

#### 사례

- 수급권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반사적으로 나간 주먹으로 쌍방폭행이 되었을 때 의료급여 여부

#### 판단

-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급여제한규정(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임. 그러나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법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급여제한 사유는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의료급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와 ‘보험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은 명백하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되 그 입증책임은 보장기관에 있다. 이는 보장기관의 수급권 제한이 수급권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의료급여 형평성의 또 다른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
- 따라서 쌍방폭행에 의한 의료급여 사고라 하더라도 폭력행위와 보험사고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고의의 범죄행위로 보아 급여제한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바, 폭행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정황 및 피해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하며,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려 찰과상 등을 입힌 정도의 사정은, 설령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08. 7.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 1-10. 오토바이 단순 조작 미숙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 사례

- 시동이 걸려있는 오토바이에 올라 앉아 호기심에 핸들을 조작하다가 잘못 조작하여 순간적으로 급 발진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에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조작하다가 잘못으로 부상당한 사고를 단순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해당 사고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객관적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는 없음

## 1-11. 불가항력의 교통사고

### 사례

-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시동이 꺼지면서 제동장치가 되지 않아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였으나 차량이 전복되어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안전의무위반으로 급여제한이 가능한지, 동승자의 의료급여비용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사고당시에 운전자에게 차량을 운행 중 기대가능성이 거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방어운전을 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외부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급여를 제한할 수 없음
- 기타 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구상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자배법 제3조에 따라 동승자 부상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무과실 책임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량소유자와 자보회사를 상대로 구상은 가능하다 할 것임

## 1-12. 미성년 형제자매의 사소한 싸움

### 사례 ▶

- 형제간(미성년자)에 서로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때려 부상을 입혔을 경우 의료급여 여부

### 판단 ▶

- 의료급여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서의 ‘고의’란 정상적인 판단능력(책임변식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며, 대법원은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 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01.3.9. 선고 200다67020 판결)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인 형제는 책임변식능력이 부족 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였다면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급여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며 법적대리인의 책임 역시 통상의 주의를 주는 등 지도를 하였다면 관리감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정당결정



### 1-13. 정신분열증 환자 탈출 시 생긴 부상

#### 사례

- 정신분열증 환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치료 중 본인의 병증상인 피해망상과 환청에 의해 창문 창살을 부수고 창밖으로 탈출하다가 추락하여 발생된 부상의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 한지 여부와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이 제3자(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성이 있으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 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광주고등법원 2003. 7.2. 선고 2003나1808 판결).
- 사고 당시 환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가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판별할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에 있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는 환자의 보호관리하고 감독하며 치료 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감독 치료의 책임이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책임이 환자의 책임보다 적지 않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1552 판결).
- 다만,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중인 환자 사고의 경우, 요양기관의 환자 관리 잘못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동 상병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 1-14. 위급상황 제지 시 입은 부상

#### 사례

- 수급권자 A의 아버지 B가 자신의 쳐지를 비관하여 창고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음독, 자해 하려는 순간 A가 이를 발견하고 창고에 들어가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급한 나머지 주먹으로 창고 유리창을 가격하면서 우요골신경손상의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의료급여 인정 여부

#### 판단

-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에서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켰을 때 의료급여를 제한하는 바, 이 사고와 관련 수급권자 A의 행위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거나 최선의 행위로 볼 수 있어 본 건은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임

### 1-15. 오토바이 무면허·음주사고 동행자인 수급권자

#### 사례

- 오토바이 운전자 A의 무면허·음주사실을 알고 수급권자 B가 동승한 채 사고를 당한 경우, 수급권자 B에 대한 의료급여 제한 여부

#### 판단

- 동승자의 행위는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법·도로교통법 기타 특별법령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 동승자에게 의료급여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A와 함께 동승자에 대해서도 사고에 따른 손해의 구상권 행사는 가능
- 동승자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에 사고가 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운전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그 비율은 25%로 봄이 상당함(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 의무와 과실의 비율을 결정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11.14. 선고 2006가단68688 판결).



### 1-18.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

-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가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의 급여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재대상인 행위는 법률상의 범죄와는 구별되어 법률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정될 뿐임
- 따라서, 의료급여법 제15조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1-19. 급여제한이 소송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한 효력

**사례 ▶**

- 보장기관의 급여제한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급여제한의 효력은?

**판단 ▶**

- 행정소송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당사자인 보장기관은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부담(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인 의료급여기관에도 효력이 미치게 됨
- 판결이 확정되면 보장기관의 취소, 취소 통지 등 별도의 행위 없이 처분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어, 수급자는 의료급여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수기를 적용하여 수급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과오납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

## 1-20. 통화 내용에만 근거한 사전급여제한

### 사례 ▶

- 온천에서 온천욕을 하고 나오다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려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온천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구두 진술을 근거로 한 급여제한의 효력

### 판단 ▶

-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후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상 당연히 대위하고, 가해자인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는 그 지급받은 배상액 한도 내에서는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인 수급권자의 이중적인 손해전보를 배제하고 의료급여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보완 관계에 따른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볼 것임(수원지방법원 2007.10.16. 선고 2006단2729 판결)
- 보장기관이 수급자가 가해자 및 피해자 측 손해 보험사에 의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이후 수급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실제 합의가 성립된 날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를 확인 없이 제한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최종 합의일을 기준으로 부당결정 하여야 함

## 1-21. 공무집행 방해 중 입은 부상

### 사례 ▶

-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깨뼈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 급여제한 여부

### 판단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1777 판결)
-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성과 진정성이 인정되는 사법기관의 인정사실을 토대로 판단하여 동 사실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다면 이는 급여제한 사유로 실제 급여가 이루어졌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



## 1-22. 특수협박과 방어행위 인정 여부

### 사례

- 노상에서 시비가 되어 상대방들과의 시비 중 도끼를 들어 위협을 한 사실이 확인된 수급자가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판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1777 판결)
- 쌍방폭행은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에 대하여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3.8.24. 선고 92도1329 판결), 서로간의 공격과 방어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고의의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사고로 의료급여가 제한됨이 원칙임
- 수급자는 도끼를 들고 상대를 위협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의해 유죄로 판결되었으나, 이를 기계적으로 인정하여 결정해서는 안되며, 다툼에 이르게 된 과정과 폭행의 양상 및 사회적인 비난가능성과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위 사례에서 수급자가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도끼를 휘둘렀으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사실등이 확인된다면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급여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3

## 다른 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급여제한

## 2-1. 수급권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사례

- 피해자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배상심의회의 배상을 받은 경우 급여제한 여부

## 판단▶

- 의료급여법 제19조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급여 청구권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 수급권자가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제한하거나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으나, 위자료 등 치료비 이외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배상심의회의 화해의 효력은 의료급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보장기관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2-2.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 사례

- 산재보험에 미 가입한 사업자의 사업주에게 재해근로자의 의료급여 상당액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에 대한 적법 여부

## 판단▶

- 산재보험 미 가입 사업자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
-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양보상을 신청하여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동 금원에 해당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모면한 경우, 재산의 소극적 증가에 의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보장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동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할 수 있음



## 2-3.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급여 제한

### 사례

-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제한 여부

### 판단

- 근로자인 수급권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용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 및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의료급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업무상 재해 등으로 발생된 질병·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의료급여법 제23조)할 수 있으며, 사용자 등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2-5. 공공근로사업장에서의 작업 중 부상

### 사례

- 지자체 주관 공공근로사업장에서의 작업 중 부상한 경우 업무처리방안

### 판단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동법 제1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양보상 책임이 있으며, 보장기관이 피해 근로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가능
- 다만, 의료급여를 행한 보장기관과 공공근로사업 수행주체인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즉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되는 권리주체와 구상권의 상대방이 되는 제 3자 모두 동일 시·군·구일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혼동)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채권이 제 3자의 권리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기관으로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만 그 재원이 되는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되고 그 관리주체가 시·도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의 구상권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해당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 가능

## 4

## 의료급여비용의 환수

## 3-1. 합의금 초과 시 부당이득 징수 여부

## 사례

- 수급권자 A는 가해자 B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어 금 3,800만원을 받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 동생 C의 채무보증 하에 기관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의료급여를 받았으나, 합의 당시 예상과 달리 총진료비가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4,815만원으로 합의금을 초과한 경우 합의 후 수급으로 보아 A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가해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합의시점 이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의무는 면제되고, “손해배상을 받은 때”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지불된 것을 의미하고, “그 배상액의 한도 내”라 함은 현실적으로 지불된 배상액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면제·포기한 경우까지를 포함
-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여 합의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함
- 또한, 권리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면제나 포기·화해 등은 진정한 것임을 요하고 있으며, 합의나 청구권의 면제나 포기·화해가 진정한 의사에 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의금액이 수급권자의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후유증이 합의 당시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지, 기타 합의나 면제·포기·화해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합의금에 기관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명확하고, 합의를 무효로 볼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 합의금을 초과한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수급권자 A로부터 기관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 3-2. 강제조정으로 인한 합의 후 수급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범위

#### 사례

- 수급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여부 및 기관부담금이 손해배상금을 초과한 경우의 부당이득 징수범위

#### 판단

-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급여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여부에 따라 급여제한 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수급권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상태는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항의 합의 후 수급에 해당
- 관할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가 결정문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합의내용에 진료비(기관부담금)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합의 후 수급에 해당되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제한 또는 부당이득 징수 가능

### 3-3. 합의 후 수급과 과실비율 적용

#### 사례

- 수급권자(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과실이 있고 합의 후 급여비용을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액

#### 판단

- 제3자의 가해(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진료를 받던 중 가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에, 합의금으로 진료비를 충당하여야 함에도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수급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해야 함
- 수급권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피해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에 의한 결정보다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사실심리(판결)에 의한 결정을 수용함이 객관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3-4. 가·피해자 간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사례 ▶

- 가해자와 피해자(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

#### 판단 ▶

-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의료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장기관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한 전액임
- 예를 들어, ① 기관부담금이 2,000만원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6:4인 경우, 보장기관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 ② 총진료비가 2,000만원(기관부담금 1,400만원, 피해자 부담 600만원)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6:4인 경우, 보장기관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1,200만원
-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여부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즉 피해자의 과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당급여를 해야 할 것임

### 3-5. 부당이득 구분 산정

#### 사례 ▶

- 수급권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급여발생 비용과 기존 질환의 치료에 따른 급여 발생 비용이 혼재된 경우의 부당이득 징수방법

#### 판단 ▶

-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부당이득금의 환수 대상이 되나, 다른 정당급여 진료비가 혼재된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진료받은 의료급여 기관에 구분산정을 의뢰하고 회신받은 금액을 토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 3-6. 의료급여 제한자 선(先) 급여 후 부당이득 환수

#### 사례

- 수급권자 A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연석선을 충격하는 사고로 판명되어 의료급여법 제15조를 적용하여 급여를 제한하였으나, A의 처인 B가 매일 찾아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의료급여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나 선 급여 후 차후에 부당이득으로 환수함이 가능 한지 여부

#### 판단

- 의료급여 제한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선 급여 후 사후 환수하는 것은 불가함
- 다만, 보장기관이 조사한 결과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부 또는 일부의 의료급여를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가 가능함(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8조 인용)

### 3-7. 운전자 과실에 의한 차량 소유자 부상

#### 사례

-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자를 태우고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소유자가 부상한 사고에 있어 동 소유자에게 자배법 제3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이득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 자동차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동법에 의한 운행자의 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의 배상책임이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이 운전 중이던 자신의 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부상을 당한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 3-8. 교통사고 시 동승자 부상

#### 사례

- 의료급여 수급권자 B를 태운 채 운행 중인 운전자 A의 오토바이와 C가 운전하던 D교통 소속 택시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양 차량 모두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직각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사망하고 동승자 B가 사고를 입은 사고에 있어서 수급권자 B의 의료급여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건 사고는 A와 C의 공동불법행위로 B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자배법 제3조에 의거, A와 C, D 이상 3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다만, A는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자(A\*)가 배상 책임이 있는 바, A\*와 C, D 이상 3인에게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물어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구상금을 결정·징수

### 3-9. 동승가족 교통사고 시 배상책임

#### 사례

- 무면허인 자가 운전하는 차에 소유자(수급권자)가 동승 운행 중 사고를 내고 소유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판단

- 동승가족 교통사고로서 운전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와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라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 운전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피해자가 그 행위를 사전에 인지(단, 책임능력 없는 피해자인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피해자에게는 의료급여를 하되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 3-10. 독립세대를 구성한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손해배상

#### 사례

-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차남(독립세대 구성)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동승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구상권 청구 여부

#### 판단

- 동일가계 구성원이 아닌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자간에 그 어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동 상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가능하더라도,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사전에 그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의 상해 사고라면 보장기관이 구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자배법 제3조를 근거로 차량 소유자의 연대 납부의무자로서의 선정은 불가함

### 3-11.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의 부모책임

#### 사례

- 고등학교 1학년생인 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운전하다가 B(수급권자)를 부상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판단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 B는 A의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책임에 관하여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B가 입증해야 함

**[판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또한, 자배법 제3조에 의해 오토바이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3-12. 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능력과 손해배상

#### 사례

- 고등학교 2학년생(수급권자)이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여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판단 ▶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부모 등 법정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18세의 학생에게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므로 친권자에게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만 15세 정도 이상)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주장하는 자)이 입증해야 함(민법 제750조 적용)
- 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 불량서클에 가입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자의 부모들이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



### 3-13. 미성년 수급권자 사고

#### 사례

- 운전자 A(13세)는 동승인 B(수급권자, 13세)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발생한 급여사고에 대하여 동승인 B에 대한 의료급여 여부

#### 판단

-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750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755조에서는 동승인 B에 대하여는 가·피해자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제한 또는 급여 후 구상권 행사(운전자 A의 친권자)
- [판례] 12세까지 책임능력 부인, 15세 이상 인정, 13~14세 경우에는 연령, 교육정도, 환경, 지위, 신분, 평소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책임능력 인정여부 결정

### 3-14. 불상의 제3자로부터 구타

#### 사례

- 수급권자가 아닌 A가 불상의 제3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A의 형인 수급권자 B의 이름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경찰서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료급여증 대여수급으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구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가 적법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의료급여비를 보전하는 법적 장치로서 피해자의 적법한 의료급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 구상권이 존재할 여지가 없음
- 증을 대여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증 대여 수급과 관련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A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
- A, B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A와 B를 연대하여 고지

### 3-15. 조건부 합의 후 의료급여 진료

#### 사례

- 2000.2.28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사고에서, 2000.3.5 가·피해자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며, 동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장애 발생시에도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금을 수령한 후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기금 부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구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사고 당시의 합의의 내용을 보면 책임은 지되 향후 발생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사항으로 해석되어 질환이 발생되는 때마다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아직 손해배상을 다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경우에는 구상이 타당

### 3-16. 공익근무요원 업무시간의 개인적 용무 중 사고

#### 사례

- ○○군청 환경녹지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A가 업무시간 중 개인적 용무로 동료요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반대편 시멘트 벽을 충격하는 사고로 운전자 자신은 사망하고 동승한 동료요원인 수급권자 C가 부상을 입고 의료급여를 받은 건에 대한 구상권 대상 결정

#### 판단

- 이 건은 복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용무 중 부상이므로 ○○군청은 법적 책임이 없음
-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동 오토바이 소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배기량 50cc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있으므로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자 또는 오토바이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 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운행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연대하여 구상 가능



### 3-17. 학원에서의 부상의 경우 원장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

#### 사례

- 속셈학원 수업종료 후 귀가차량을 기다리던 중 다른 원생들과 장난을 치다 부상을 당한 경우 학원장에게 구상 가능 여부

#### 판단

- 사설학원과 수강생과의 관계는 학원과 수강생(또는 부모)간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학습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로 사설학원은 특정 교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생의 학원 내 활동에 한해 보호감독의무와 그 책임을 부담하고 당해 수업을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업 종료 후의 학생들의 개인행동에 따른 사고는 사고가 학원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하지 않은 이상 학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귀가차량을 기다리던 중 부상한 경우는 학원장이나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3-18. 천재지변(태풍에 의한 간판추락)과 배상 책임

#### 사례

- A 소유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길을 가던 수급권자 B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진료 중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천재지변의 사고로 정당급여 가능 여부)

#### 판단

- 민법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사유로는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의 경우로 한정하고, 동 조 제1항 단서 조항에 피해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민법 제755조에서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
- 민법은 타인의 손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태풍에 의하여 간판이 떨어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그 소유자는 당연히 위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수급권자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는 중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급여를 행하는 것이고,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되지 않음

### 3-19. 부진정 연대자 중 1인과의 합의의 효력

#### 사례

- 20○○.2.10 폭행사고(가해자 2명)로 피해자가 100여일 이상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고 20○○.2.15 가해자 2명 중 한명과 합의한 경우(다만, 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없음), 급여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진정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구상결정 건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2명의 가해자가 부진정 연대 배상 대상인 경우, 2명 중 누구와 합의가 있던 합의는 이후 어진 것이므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구상 합의 후 수급으로 결정(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각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 범위가 정확하게 확정된 건은 나머지 한사람에 대하여는 아직 합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구상결정하여야 하고, 합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상합의 후 수급으로 판단

### 3-20. 가·피해자간 합의 시 기왕에 취득한 구상권 행사

#### 사례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후 가·피해자 상호간의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한 합의의 효력이 기왕에 취득한 보장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단

- 보장기관의 구상권 취득은 법정대위로서 청구권의 법적이전이며 수급권자의 지위를 계승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만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민법 제399조)와 성질이 같은 것으로, 청구권이 이전한 후에 수급권자와 가해자 간에 행하여진 포기·화해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무효행위라 할 것이므로 보장기관에 대항할 수 없음
- 가·피해자간의 과실 비율이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업무처리를 해야 함



### 3-21.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

#### 사례

-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액을 9,379,936원으로 산정(20% 과실 상계로 7,503,948원만 인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공탁금 1,000만원을 수령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기관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판결에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일실손실과 치료비(본인부담금)로 산정한 경우, 손해 배상의 일부로서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이의를 유보(예 : 손해배상 금의 일부금으로 수령한 것임)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장기관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 3-22. 교통사고 합의 후 구상권 행사

#### 사례

- '06.7.18 운전자 A가 피해자 B를 동승시킨 채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 하여 오던 차량을 충돌하여 동승자 B는 부상을 입고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던 중, '06.9.12 가·피해자간에 “치료비 포함 합의금조로 금 500만원을 지불 받고 차후 이 건으로 민사나 형사사건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으로 쌍방 합의”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07.4.23. 현재 보장기관이 17,354,240원, 수급권자가 4,668,400원의 진료비를 각각 부담한 사실이 있는 바 합의 이후에 발생된 기관부담금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진자 B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합의서 내용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되고, “치료비 포함 합의금조”라는 문구 내용에 기관부담금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합의내용에 보험자부담금이 포함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합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인한 것이어야 하며 손해금액과 합의금액 크기의 교량, 합의당시의 전후사정 등을 고려 하여 해석해야 함
- 합의금 500만원은 총 진료비 22,023,360원의 1/4에도 못 미치는 소액인 점은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가해자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

### 3-23. 폭행사건 합의 후 합의금 일부 지불 불이행의 경우 구상권 행사

#### 사례 ▶

- 제3자의 폭행으로 부상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던 중 가·피해자간에 9주간의 입원 치료비, 수술비, 약품비 및 등교를 못한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중 800만원만 지불하고 200만원은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단부담금은 합의 전후에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음
- 이 경우, 기관부담금을 수급권자에게 것으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완전 이행치 않고 있더라도 일부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합의일 이전 진료비만 구상하고 이후는 부당이득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완전 이행치 아니하여 이는 진정합의로 볼 수 없어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 판례(86다카2328 : '87.4.28, 91다 16372 : '91.8.9)는 수급권자는 보장기관에게 이전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청구권이 이전된 후에 행하여진 포기, 화해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무효행위로 보장기관에 대항할 수 없음
- 손해배상을 받은 때라 함은 화해가 성립된 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지불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치 않고 있다면 진정합의로 볼 수 없어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완전이행 전까지는 가해자에게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3-24. 합의한 날에 진료 받은 진료비 구상

#### 사례 ▶

- 퇴원일에 가·피해자간에 합의한 경우, 퇴원일 진료비 구상 여부

#### 판단 ▶

- 계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일에 합의가 이루진 경우, 입원치료의 연속성에 비추어 퇴원시간과 합의시간과의 선후에 관계없이 이미 합의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퇴원일의 의료급여에 대하여도 가해자는 의료급여 이후 합의로써 보장기관에 대항할 수 없음



### 3-25.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사례 ▶

- 피해자인 수급권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동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을 청구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 피해자 가족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보장기관이 부담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19조에 의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 3-26. 임의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구상권 행사 여부

#### 사례 ▶

- 보험회사에서 동승가족 자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치 아니하고 임의보험인 자기신체손해보험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대인배상 I)이 아닌 자기신체손해보험(장례비 포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며 법 제19조의 손해배상을 받은 때로 볼 수 없어 법 제23조에 의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하는 것은 불가
- 따라서, 보장기관은 보험회사의 자기신체손해보험 적용과 상관없이 동승가족의 급여비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하여 보험회사에 구상

### 3-27. 법원의 확정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성

#### 사례

- 수급권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보장기관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일반적으로 수급권자가 사고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기관은 소요된 의료급여비용 한도내에서 제3자(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급여 비용의 범위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보장기관으로 이전되고 수급권자는 그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
- 여기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장기관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이는 권리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 보장기관의 구상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3-28.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합의금 수령 후 발생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 사례

- 수급자가 자전거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자전거 운행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추월하다 충돌, 넘어지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수급자가 자전거협회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 판단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임의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구내 치료비 추가특약의 경우 영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바 수급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 영업주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이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할 수 없음

## 5

## 소멸시효 기산 등 시점의 판단

## 4-1. 소멸시효 기산 시점

## 사례

-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

## 판단▶

-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가해행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 당시부터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해발생일이 소멸시효 기산일

## 4-2. 사건발생일이 아닌 판결일자 등으로 소멸시효 계산 여부

## 사례

- 소멸시효 기산일을 사고발생일이 아닌 최종 판결일자 등으로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지 못하거나 가해행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민법 제77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말한다고 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판 2008. 4.24, 2006다30440)
- 따라서, 피해발생 사실을 안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의 요소가 되는 가해자, 책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 **소송 계속의 경우에는,** 중대한 법적 쟁점이 연관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게 된 때에 소멸시효가 기산

### 4-3.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 사례

- 수급권자 A는 2011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2012년 6월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 징수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 패소한 경우, 다음 중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 i) 실제 치료를 받은 2011.6월, ii)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취소한 2012.6월, iii) 패소 판결이 확정된 2012.12월

#### 판단 ▶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단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5.4.28 선고, 2005다 3113)
-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재해를 당한 때부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제 치료를 받은 2011.6월부터 시효 기산



#### 4-4. “손해를 받은 때” 의 기준시점

##### 사례

- 판결로서 수급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때의 기준 시점은?

##### 판단

-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항은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손해가 현실적으로 전보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해전보적 성격의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급권자의 2중의 권리 취득을 방지
- 따라서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항의 “손해배상을 받은 때”라 함은 소송을 통한 제3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확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아 전보하게 된 때를 의미하므로, 확정판결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를 손해배상을 받은 때로 볼 수는 없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점을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때로 보아야 함**

#### 4-5.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 사례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도래할 경우의 조치

##### 판단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승인(민법 제168조)이 있으며, 그 법적 효과로는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
-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단기의 소멸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으로 연장하게 되며,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다시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 명령신청 등과 같은 재판의 청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 압류, 채무자의 변제각서 징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효관리의 편의성을 감안할 때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유리

## 4-6.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과 소멸시효

### 사례 ▶

- 시효완성 전·후의 채무자의 일부변제와 소멸시효

### 판단 ▶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특별한 방식은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 이전 묵시적이건 상관없음
- 대법원 판례도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95다 39854, 1996.1.23)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구상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민법 제178조)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이 진행하는 시효기간은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
-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대법원 2001다 3580, 2001.6.12)



## VI. 서 식



## VI

## 서식 목록

[서식 1]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183
[서식 2] 급여 제한 여부 결정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184
[서식 3] 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통보서 .....	185
[서식 4] 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신고서 .....	187
[서식 5] 압류조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188
[서식 6] 압류등기(등록) 촉탁서 .....	189
[서식 7] 압류통지서 .....	192
[서식 8] 압류해제조서 .....	193
[서식 9] 압류해제등기(등록) 촉탁서 .....	194
[서식 10] 압류해제통지서 .....	195
[서식 11] 소송비용계산서 .....	196
[서식 1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197
[서식 13] 지급명령신청서 .....	198
[서식 14] 위임장 .....	202
[서식 15] 이의신청서 .....	203
[서식 16] 이의신청결정서 .....	205
[서식 17]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	206
[서식 18] 상해요인조사 처리실적 보고서 .....	207
[서식 19] 결손처리조서 .....	208
[서식 20] 결손처분 대상자 징수독려 및 처리내역 .....	209
[서식 21] 처분사전통지서 .....	210
[서식 22] 의견제출서 .....	212



[서식 1]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11.19.>

###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

보장기관명				보장기관기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진료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외래	진료기간	. . . ~ . . .					
상 병 명				상병분류기호				
통보내역 (해당란에 “O”표)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함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급여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							
발생원인	사고부상 <input type="checkbox"/> 근무중사고 <input type="checkbox"/> 폭행 <input type="checkbox"/> 자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교통사고 <input type="checkbox"/> 운전중 <input type="checkbox"/> 보행중 <input type="checkbox"/> 기타( )							
발생장소	<input type="checkbox"/> 가정 <input type="checkbox"/> 회사내 <input type="checkbox"/> 공사현장 <input type="checkbox"/> 학교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input type="checkbox"/> 도로 <input type="checkbox"/> 기타( )							
내원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							
내원방법	<input type="checkbox"/> 119 <input type="checkbox"/> 사설응급차량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의사진찰의견								
환자·보호자 등 관계인 진술내용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의료급여 제한여부를 자체 없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인)  
주 소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이 조회서는 의료급여기관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시·군·구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18호 서식]

<b>급여 제한 여부 결정 통보서</b>			
보장기관명		보장기관기호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정사항	1. 급여적용	2. 급여제한	
제한근거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의료급여제한 개시일또는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의료급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 군수      인 구청장</p> <p>의료급여기관대표자      귀하</p>			
<p>비고</p> <p>1. 이 통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의료급여기관에 자체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3 : 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통보서]

서식번호						의료급여질병부상등 상해요인 통보서	결		
전산관리번호							재		
의 료 급 여 기 관	①기호						접수일	담당자	
	②명칭								
③보장기관명칭				④보장기관번호					
구 분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현 주 소			전화번호			
세 대 주									
수급권자									
진료내역	⑧진료개시일	⑨진료일수	⑩상병분류기호	⑪명일련번호	비고				
⑫ 내원일시	년      월      일      시경	⑬경유병(의)원							
⑭ 질병부상등을 발생경위	일시	년      월      일	오(전,후)	시경					
	장소								
	상병명								
	발생경위 (구체적으로 기재)								
⑮ 가해자 가 있는 경우	가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			
	차 량	차량번호				책임보험적용여부 :			
	사 고	소유주 (회사명)				보험사명(지점): 적용기간		부터	일간)
						까지(			
의료급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병(의원) (인)									



## 의료급여 상해요인 통보서 제출 대상자 명단

급여기관명 :

관리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 성명		수급권자 주민등록번호	
	기관번호	기관명	진료개시일	진료기간	상병분류번호	비고

[서식 4 : 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신고서]

서식번호		<b>의료급여 질병부상 등 상해요인 신고서</b>			
※ 관리번호					
보장 기관	①기호				
	②명칭				
구 분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현 주 소		전화번호
세 대 주					
수 급 권 자					
진료내역	⑥ 의 료 급 여 기 관			⑦진료개시일	⑧진료일수
⑨상기진료내역으로 처음 진료받은 병,의원				⑩진료일	
⑪ 상 병 발 생 경 위	일시	년 월 일 오(전,후) 시경			
	장소				
	발 생 경 위	(구체적으로 기재)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⑫ 가 해 자 가 있 는 경 우	가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
	차량또는 폭발사고	사 건 처 리 경 찰 관 서 명			
	차량번호		소유주(회사명)		
※ 가해자와의 합의내용 또는 합의전망 (합의시 합의서 사본 첨부)					

[서식 5 : 압류조서]

<b>압 류 조 서(집합건물)</b>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 납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특 이 사 항					
압 류 재 산 의 표시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대지권의 표시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 목	과 세 연 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액	가산금	계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시에서 참여하여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참여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6 : 압류등기(등록) 촉탁서]

<b>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집합건물)</b>								
접 수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재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대지권의 표시 )						
등기(등록) 원인과 년월일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등기 권리자		○○시						
등기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비과세						
수신 촉탁일 촉탁공무원		○○ 법원 ○○등기소 귀증 년 월 일 (소속) ○○ 시장						
		○○ 시장 (인)						
부속서류		압류조서 1부						
비고		담당자 : 전화 : 주소 :						



문서번호 사회복지과-○○○○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촉탁서(부동산)									
재산의 표시										
등록(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등록)								
등기(등록)의 권리자		○○시								
등기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세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거 비과세									
<p style="text-align: center;">수신 :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촉탁공무원 :</p> <p style="text-align: center;"><b>○○시장</b></p>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1통								
접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 기 필
	제 호									

문서번호 사회복지과-0000	<b>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촉탁서(자동차)</b>									
재산의 표시										
등록(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등록)								
등기(등록)의 권리자		00시								
등기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 세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거 비과세								
수신 : ○○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년 월 일										
전화번호 : 촉탁공무원 :										
<b>○○시장</b>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1통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제 호									



[서식 7 : 압류통지서]

<b>재 산 압 류 통 지 서(집합건물)</b>							
체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 년 월 일	2000년 00월 00일 압류						
압류 재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대지권의 표시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년도	납기 년 월 일	과세번호	세액	가산금	합계	과목	비고
계							<b>총 건수 :</b>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b>○○시장</b>							
근무 : ○○○○과				전화번호 :			
직급 :				성명 :			

[서식 8 : 압류해제조서]

<b>압류해제조서(자동차)</b>							
체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 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년 월 일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과 목	비 고
계							총 건수 :
위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전액납부로 인하여 2000년 00월 00일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b>○ ○ 시 장</b> 근무 : ○○○○과      전화번호 : 직급 :                      성명 : ○○○ (인)							

[서식 9 : 압류해제등기(등록) 촉탁서]

문서번호 사회복지과-10000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해제등기(등록)촉탁서(자동차)							
재산의 표기								
등기(등록) 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전액납부 해제등기(등록) [ 0000년 00월 00일 압류등록 ]							
등기(등록) 의무자	○○ 시							
등기 권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세	(지방세법 제 126조)에 의거 비과세							
수신 : ○○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00년 00월 00일								
전화번호 : 촉탁공무원 :								
○ ○ 시 장								
부속서류		압류해제조서 1통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기입	대조 확인	등기필		
	제 호							

[서식 10 : 압류해제통지서]

<b>압류해제통지서(자동차)</b>							
체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 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년도	납기 년 월 일	과세번호	세액	가산금	합계	과목	비고
계						총 건수 :	
위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전액납부로 인하여 2000년 00월 00일 압류를 해제하였 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시장							
근무 : ○○○○과				전화번호 :			
직급 :				성명 :			



[서식 11 : 소송비용계산서]

## 소송비용계산서

1. 제1심 (소송목적의 값 원)

변호사보수	원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소계	원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소계	원

3. 합계 원

4.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원

[서식 12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신청인(이름) ○○시 (주민등록번호) - )

(주소)

피신청인(이름) 김○○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아래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원임을 확정한다.

아래

법원명	선고(결정)일자	사건번호

### 신청이유

####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sup>1</sup>

- 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비용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 판결 등 사본
- 확정증명
- 기타( )

2000. 00. 00

신청인 ○○시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sup>2</sup> ○○시청 ○○○○과 Tel. 00-000-0000, Fax. 00-000-000)

○○지방법원 ○○지원 귀중

#### ◇ 유의사항 ◇

1.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2. 신청인의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서식 13 : 지급명령신청서]

## 지 급 명령 신 청 서

채권자 : ○○시

채무자 : ○○○

구상금 청구 독촉사건

소 가	금
첨부할인지액	
송 달 료	
비고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 ○○시

주 소 :

대표자 :

소관부서 :

전화번호 :

채무자 :

구상금 청구

금 원정

### 신청취지

채무자(송○○)는 채권자(○○시)에게 금 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합계 금 원 (내역: 송달료 원, 인지대 원)

### 신청이유

#### 1. 채권자, 채무자 및 소외 안○○ 과의 상호관계

채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에 의거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업무를 행하는 보장기관입니다.

채무자는 회사원으로 ○○시 ○○동에 거주하던 자입니다.

소외 안○○은 폭행사고 당시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했던 자입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사고내용

채무자는 2000.00.00 19:40경 ○○시 ○○동 ○○○○-○○ 소외 안○○의 집 앞길에서, 채무자의 전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아들 윤○○이 자원봉사자인 소외 안○○에게 맞았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소외 안○○을 찾아가 상해를 가했습니다.

소외 ○○은 2006.06.13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다발성 손상으로 의료급여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나. 채무금 내역

채권자는 이 폭행사고로 소외 안○○의 부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기관부담 요양급여비용 금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3. 손해배상책임 근거

채권자는 소외 안○○의 위 부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를 부담하였으므로 “보장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한 「의료급여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신청취지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관부담금 금 ○○○,○○○원을 구상금으로 결정 하여 2000.00.00까지 납부할 것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였고 우편으로 납부 독려하였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부득금원을 구하고자 이 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첨 부 서 류

1. 개인진료내역 조회 자료 1부.
1. ○○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1부.
1. 의료급여 구상금 결정내역 자료 1부.

VII. 서식

1.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 자료 1부
1.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 사본 1부.

2000년 00월 00일

위 채권자 ○○시

○○지방법원 ○○지원 귀중



[서식 14 : 위임장]

## 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소 속 :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사항의 행위 일체를 위임합니다.

다 음

1. 채권자 ○○시, 채무자 ○○○간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2000. 00. 00.

위 위임인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서식 15 : 이의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23호 서식]

(앞쪽)

<b>이 의 신 청 서</b>			
		처리기간 60 일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①처분을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처분의 내용	(처분기관 : )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년 월 일		
③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④이의신청 취지와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p>「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p> <p>.</p> <p>.</p> <p>.</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주민등록번호 :</p> <p>주소 :</p> <p>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p>			
<b>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 첨부 :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1. 수급권자의 자격 및 부당이득 징수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수급권자의 자격 및 부당이득 징수금, 의료급여, 의료급여비용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분기관 : ) → 해당처분을 한 시·군·구를 기재합니다.
3. 시·군·구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4. 시·군·구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서식 16 : 이의신청결정서]

[시행규칙 별지 25호 서식]

## 이의신청결정서

제 호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문 :

원처분 요지 :

이의신청취지 :

결정이유 :

시장·군수·구청장

※ 알림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17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별지 제11호서식]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O자)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소재지)			
비용 (부당이득)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수급자·보호대상자와 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납부(환수) 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아동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제51조, 「기초노령연금법」제12조, 「장애인연금법」제17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영유아보육법」제40조2, 「의료급여법」제23조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서식 18 : 상해요인조사 처리실적 보고서]

**상해요인조사 처리실적 보고서  
(0000년 ○○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통 보		조 사 처 리 결 과							
				정 당 급 여		부당이득 환 수 액		구상권		결 정 유 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계	소 계										
보장 기관 조사 대상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공단 조사 대상	소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식 19 : 결손처리조서]

신청번호 :							
<b>결 손 처 리 조 서</b>							
고 지 번 호			전 화 번 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내역	체 납 유 형	체 납 기 간	체 납 개 월	계	원 금	이 자	비 용
결손처분 사 유							
징수추진 내 역							
검토 의견							
첨부 서류							
20 . . .							
조사자 :      급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규격 : A4 종서식

[서식 20 : 결손처분 대상자 징수독려 및 처리내역]

### 결손처분 대상자 징수독려 및 처리내역

고지 번호	체납자 성명	전화 번호	
일시	징수독려 및 처리내역	담당	
		직급	성명
첨부 :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규격 : A4 종서식

[서식 21 : 처분사전통지서]

(전 면)

##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 - 호

시 행 일 . . . .

수 신

대표자 ○○○

귀하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 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		원 (부당금액 내역: 별첨)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당금액의 징수(시장·군수·구청장)	
3. 당사자	기관명 및 대표자		
	주 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의료법 제33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당금액의 징수	원
6.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23조 「민법」 제413조, 제414조, 제741조, 제750조	
7. 연락처	기관명	○○시	담당부서명 ○○과
	주 소		
	기 한	20 년 월 일까지	

○○○ 시·군·구청장

(후면참조)

(후 면)

〈 처분관련 참고사항 〉

조사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부당금액은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후 「의료급여법」 제23조 등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게 됩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시군구가 예정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 22 :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당금액의 징수 ○○,○○○,○○○원 - 관련문서번호(일자) : - 시·군·구 -호(20 . . . )
2. 당사자	기관명 및 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                      )</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 시·군·구청장 귀하</b></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3. 의견】란에 “이의 없음”으로 기록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기록(기재란 부족 시 별지사용)하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받으신 날짜를 1번 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상해요인 업무매뉴얼

발 행 일 2020년 3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